
IT의 발전과 상사법의 전망 및 과제



■일 시 : 2016년 2월 19일(금) 13:30~18:00

■장 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주최 : 社團 韓國商事法學會
法人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회사법센터

후원 :  (주) 한국경영관리

한국상사법학회 2016년도 동계 학술대회 일정안내

- ◆ **대주제** : IT의 발전과 상사법의 전망 및 과제
- ◆ **일 시** : 2016. 2. 19.(금) 오후 13:30-18:00
- ◆ **장 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 ◆ **주 최** : (사)한국상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회사법센터
- ◆ **후 원** : ㈜한국경영관리

등록/개회	■ 등 록 : 13:30-13:50 ■ 개회식 : 13:50-14:00 ◎ 개회사 : 신현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환영사 : 김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기총회	■ 정기총회 : 14:00-14:10 전체사회 : 김흥기 총무이사 학술사회 : 안수현 연구이사

세션	발표자	주제	사회자	토론자1	토론자2
제1세션 14:10-15:00	윤영신 교수 (중앙대)	인터넷상 개최되는 전자주주총회 동향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정완용 교수 (경희대)	장근영 교수 (한양대)	손영화 교수 (인하대)
제2세션 15:00-15:50	박선영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온라인 보험판매 회사제도 사례와 개선방안	최병규 교수 (건국대)	황현영 입법조사관 (국회)	고기호 부장 (삼성화재)

Coffee break (15:50-16:10)

제3세션 16:10-17:00	이효경 교수 (충남대)	ICT시대의 핀테크 규제에 관한 고찰	강대섭 교수 (부산대)	정대 교수 (한국해양대)	이효찬 실장 (여신금융 연구소)
제4세션 17:00-17:50	이기종 교수 (숙명여대)	플랫폼 최저가 보장 약정 (APPA)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안	배진철 원장 (공정거래 조정원)	이동원 교수 (충북대)	주진열 교수 (부산대)

□ 종합토론 및 폐회 (17:50-18:00)

IT의 발전과 상사법의 전망 및 과제

목 차

[제1세션]

- 발표 : 인터넷상 개최되는 전자주주총회 동향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3
윤영신 교수(중앙대)

[제2세션]

- 발표 : 온라인 보험판매회사제도 사례와 개선방안29
박선영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제3세션]

- 발표 : ICT시대의 핀테크 규제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금융규제의 동향을 중심으로-.....49
이효경 교수(충남대)

[제4세션]

- 발표 : 플랫폼 최저가 보장 약정(APPA)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안75
이기종 교수(숙명여대)

제1세션

인터넷상 개최되는 전자주주총회 동향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윤영신 교수(증양대)

토론자 : 장근영 교수(한양대)/ 손영화 교수(인하대)

사회자 : 정완용 교수(경희대)

인터넷상 개최되는 전자주주총회 동향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윤 영 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目 次]

- I. 서 론
- II.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입법례 및 현황
- III.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시각
- IV.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제도적 정비 : 전자주주총회 허용 관련 규정
- V.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제도적 정비 : 전자주주총회 운영 관련 규정

I. 서 론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의 총의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의 선임·해임을 통하여 경영자의 대리인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회사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합리적 무관심 등의 이유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는 회의적이다.¹⁾

주주총회 형해화에 관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주주총회의 형식성을 정면으로 인정하여 회의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주주의 참여를 증가시켜서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주주총회 활성화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주주총회의 여러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다. 우선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의결권행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는 각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수 있고(상법 363조 1항; 이하 상법은 법령명칭 생략함), 2009.5.28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368조의 4)²⁾, 201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림자투표제도가 폐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5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015.8)에서는 2014.4.1. 이후 2015.3.31 사이에 개최된 상장회사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를 분석하였는데, 주주참석률이 '10% 이하'인 회사가 245개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참석률의 경우 '70% 초과 80% 이하'가 93개사(24.0%)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의 평균 소요시간은 33.1분이고, 주주들의 1사당 평균 발언은 4.4명으로 1인당 평균 발언시간은 2.4분이다.

2) 2014 회계년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16개사(3.7%)이며, 이들 회사들의 주주참석률과 주식참석률이 1%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63개사

지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12.29.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임장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임장권유 및 위임장의 수여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³⁾

또한 주주총회를 인터넷으로 현장중계하는 경우도 있고⁴⁾, 주주총회를 제1회의장과 제2회의장으로 분산개최하면서 각 회의장을 비디오콘퍼런스 설비로 연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실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주주총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즉, 인터넷상 일정한 플랫폼에 접속하여 쌍방향 통신수단에 의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등 의사진행에 참여하고 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주주총회는 ① 물리적 공간에서 현장총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경우와(현장병행형), ② 현장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전적으로 전자주주총만을 개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현장대체형).

앞에서 살펴본 주총소집,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주주총회의 현장중계, 비디오콘퍼런스는 모두 현장총회가 개최되어 현장총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자위임장제도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현장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것이고, 주주총회의 현장중계도 플랫폼에 접속하여 현장중계를 듣거나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주총회 출석의 의미는 없다. 주주총회 분산개최도 주주나 그 대리인이 제1회의장이건 제2회의장이건 물리적인 회의장에 존재하여야 한다.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현실총회에 출석을 전제로 하면서, 불참시 의결권만을 전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주주총회의 의사에 전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총회에 주주 내지 대리인이 직접 물리적 출석을 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이 되어 심의에 참여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 출석한 상태를 전자적 수단으로 달성하는 것으로서⁵⁾ 주주총회 ‘자체’를 전자화 하는 것이라 볼 수 있

(14.9%)로서, 주주참석률과 주식참석률이 1%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위의 책, 34면, 표18-2).
3)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주주총회 참가 위임장을 수여하기도 하고(덴마크), 주주가 주주총회 자료상의 이러한 서비스를 QR 코드를 스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4) 미국에서는 Bell & Howell사가 1996년 최초로 주주총회를 웹캐스트로 중계한 이래 Niri(<http://www.niri.org>)에 의하면 31% 정도의 회사가, TheCorporateCounsel.net(<http://thecorporatecounsel.net>)에 의하면 3분의1 정도의회사가 웹캐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Neil Stewart, The Debate abou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R Magazine (2010.10.22), <http://www.irmagazine.com/articles/proxy-voting-annual-meetings/16596/debate-about-virtual-shareholder-meetings/>).

우리나라에서도 KT 2003년 주총, 조흥은행 2001년 및 2002년 총회 등이 인터넷중계 되었고, 나우콤은 2011년 상장사 최초로 주주총회를 인터넷 중계하였다(2011.2.18.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1812452257185>). 일본의 자료에 대해서는 山田尙武, “2002년주주총회의 인터넷 공개의 실제(상)·(하)”, 『상사법무』 1649호 (2002), 20면 이하, 1650호 (2002) 23면 이하 참조.

5) 鮎瀬典夫, “株主總會をめぐるこれまでの論議と電子株主總會”,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 神田秀

다.⁶⁾

그런데 전자주주총회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돈이 발생한다. 혹자는 주주총회의 전자화 전반을 포괄하여 전자주주총회라고 기술하기도 하고, 이 논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주총회 ‘자체’의 전자화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후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① 현장병행형인가 아니면 ② 현장대체형 총회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문헌에 따라서 virtual·online·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①과 ②를 합한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②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어떤 논자는 ①을 online 총회 ②를 virtual 총회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virtual 총회 등의 용어를 ①과 ②를 합한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도 ①을 hybrid 총회 ②를 virtual-only, remote-only 총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술하고 있다.⁷⁾ 그러다보니 입법례에서 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되는가 등의 문제를 다룰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①을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②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분류하고, ①과 ②를 모두 지칭할 때는 전자주주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⁸⁾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소집통지의 전자화,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의 법제화까지 이루어졌으나, 전자주주총회 자체에 대해서는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법제화된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등의 법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최근 외국입법례에 대한 분석도 충분치 않다. 또한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전자주주총회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위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법제화 하는 경우에 생각해 봐야 할 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제도를 임의적 제도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책임경영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판단까지는 논하지는

樹 編, 弘文堂 (2003), 2면 각주 2.

6) 최근에는 전자주주총회에 모바일기기를 통한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5.6.4. 개최된 FloraHolland사의 전자주주총회에서 Lumi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초로 모바일을 통하여 주주총회에 실시간 참여하고 투표가 이루어졌다.

7) Bernd Beuthel, Electronic Corporate Governance : Online and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Shareholder Participation in Switzerland and Germany, Dissertation for the University of St. Galle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Law and Social Sciences (2006), p. 43; 김순석,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상장협연구보고서 2006-1 (2006.8), 2면; 장영수,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증권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4), 181면 [이하 장영수(2014)로 인용함].

8) 권종호, “비채널주주총회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입법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9), 13면에서는 본고의 현장병행형을 ‘불완전비채널총회’, 현장대체형을 ‘완전비채널총회’라고 표현하였고,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5)[이하 장영수(2015)로 인용함], 175면에서는 ‘현장병행형’과 ‘현장생략형’으로 구분한다.

않고, 일단 법제화를 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입법례 및 현황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선도적 입법은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이루어졌다. 델라웨어주는 2000.6.23 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된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 DGCL)에서 세계 최초로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모두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⁹⁾ 그 이후 델라웨어의 예를 따라 미국의 여타 주 회사법과 일부 국가에서 전자주주총회를 인정하는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는 회사법에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터키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는 주주총회 관련 전자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전되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¹⁰⁾

1. 미국

(1) 입법현황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주주총회는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에서 델라웨어주 내 또는 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개최장소를 결정하는데(DGCL §211(a)(1) 전단), 이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적인 재량으로 주주총회가 일정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고 §211(a)(2)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원격통신(remote communication)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다(DGCL §211(a)(1) 후단). 이사회가 원격통신을 통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나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 현장총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주주 또는 위임장보유자는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격통신을 통한 주주총회가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인 때에는, 주주 또는 위임장보유자는 총회가 일정 장소에서 개최되는지 또는 원격통신에 의해 개최되는가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어 투표를 할 수 있다(DGCL

9)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Senate Bill No. 363.

10) 2001.5.15. 개정된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225-107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면투표를 인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디오컨퍼런스나 시행령에 정하여진 성질과 조건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통신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정족수와 다수결 산정에서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전자투표제도를 규정한 것이지만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개정된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 amended by The Companies (Shareholders' Right) Regulations 2009 (S.I.2009/1632)) s. 360A는 조문의 표제를 'electronic meeting and voting' 라고 하고 있는데, 복수의 회의장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주총을 개최하는 것과 전자투표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11(a)(2) a 및 b 전단).

그 요건은 (i) 원격통신을 통하여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고 투표가 허용된 자가 주주 또는 위임장보유자임을 확인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ii) 회사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 주주 또는 위임장보유자가 의사진행과 실질적으로 동시에(substantially concurrently) 이를 읽거나(read) 또는 들을 수(hear) 있도록 하는 등 총회에 참가하고 의안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iii) 주주 또는 위임장보유자가 원격통신을 통하여 투표 또는 기타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그러한 투표 또는 행위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델라웨어주에서는 현장병행형뿐 아니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도 허용되었다.

델라웨어주의 회사법 개정 이래 미국의 과반수가 넘는 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델라웨어처럼 두 가지 모델을 모두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현장병행형만 허용하는 유형도 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예 전자주주총회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들도 다수 존재한다. 2010년에는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이 개정되어 두 방식의 전자주주총회가 모두 명시적으로 허용되었다.¹¹⁾

[미국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주법]

구분	내용	합계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 모두 허용	Arizona, California, Colorado, Delaware, Florida, Hawaii, Kansas, Kentucky,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orth Dakota, Ohio,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West Virginia, Wyoming * Rhode Island는 법문상 현장대체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임. * Massachusetts는 비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 허용되고 공개회사는 현장병행형만 허용됨 * Pennsylvania는 주주가 5,000인 미만이 회사에서는 현장병행형만 허용됨.	24
현장병행형만 허용	Illinois, Indiana, Montana, Nevada, North Carolina, Oregon, Virginia, Washington * Montana주는 주주가 50인 이하인 회사에서만 허용	8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없음.	Alabama, Alaska, Arkansas,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Georgia, Idaho, Iowa, Louisiana, Maine, Mississippi, Nebrask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South Carolina, South Dakota, Wisconsin	20

* 출처: Lisa Fairfax,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Reconsidered, 40 Seton Hall Law Review 1367 (2010)

(2) 실태

2009년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 Broadridge사에 따르면 2014년에는 총 93건의 전자주주총회가 개최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3건이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였다고 한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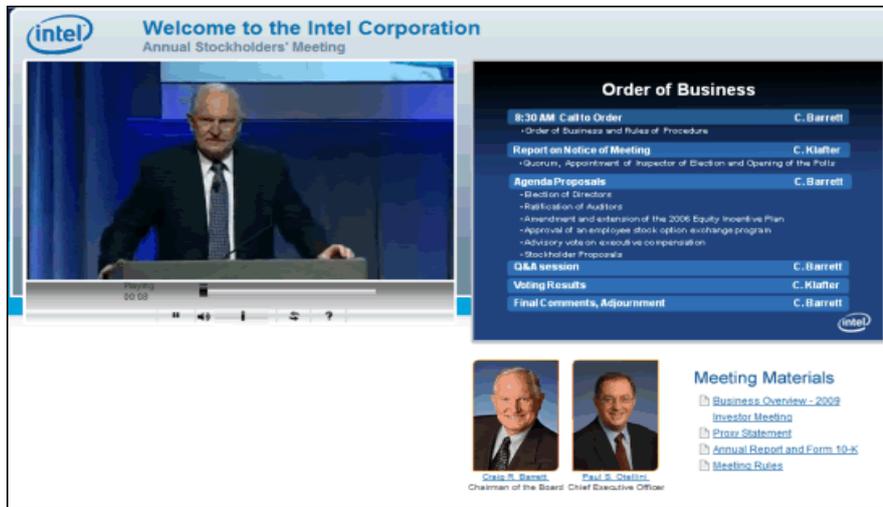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administrative/business_law/corplaws/changes-mode-l-bus-corp-act-w-cmnts-2010.authcheckdam.pdf.

[Broadridge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장 대체형	1	19	21	27	35	53
현장 병행형	3	9	18	26	32	40
합계	4	28	39	53	67	93

* Donald Ainscow & Harva Dockery, "Top Ten Things to Remember When Consider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2014.12.13)

미국에서는 Bell & Howell사가 1996년 최초로 주주총회를 웹캐스트하였는데, 230명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였다. 회사는 이메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5명이 질문을 하여 CEO가 이를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주주들에게 읽어준 후 응답을 인터넷상에 타이핑하였다. 온라인 참가에 주주총회 출석의 효과가 인정된 전자주주총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델라웨어에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¹²⁾ 최초의 전자주주총회는 Delaware주에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입법이 시행된 이후 2001년 4월 Inforte사가 개최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이다. Inforte사는 총회 전 및 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질문을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하였다. 이 총회는 실시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고, 접속하여 참석한 사람들은 설명 사안에 관한 몇 장의 파워포인트 화면도 볼 수 있었다.¹³⁾ Inforte사는 팩스를 통하여 투표권을 수령할 준비를 하였으나, 97%의 주식이 총회 전에 fax로 투표하여 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실시간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¹⁴⁾ 실제로 실시간 전자투표까지 시행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은 2009년 Intel이 최초로 개최하였다.



* Dominic Jones, More U.S. Companies Choosing Virtual Annual Meetings, IR Web

12) Daniel Adam Birnhak, "Online Shareholder Meetings : Corporate Law Anomalies or the Future of Governance?", 29 Rutgers Computer & Tech. L. J. 423 (2003), p. 439.

13) Birnhak, op.cit., p. 439-440.

14) Elizabeth Boros,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40 Seton Hall L. Rev. 1367 (2010), ¶15.

Report (2010.3.31), <http://irwebreport.com/20100331/virtual-annual-shareholder-meetings/>

일부 전자주주총회는 오디오만으로 시행되기도 하고, 일부는 영상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¹⁵⁾ 총회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단말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주들의 모든 질문을 온라인상으로 게시하지는 않고 주총운영자가 총회 전과 실시간으로 제출된 질문 중 선택하여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¹⁶⁾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이나 2010년에는 주로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이용이 많다가¹⁷⁾ 점점 이용기업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¹⁸⁾ Broadridge사에 따르면 현장 대체형은 소규모 회사가 이용하고, 주로 비용절감차원에서 채택된다고 한다.¹⁹⁾

2. 캐나다

캐나다는 2001.11.25부터 현장대체형 및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다(CBCA s.132(4), (5)).²⁰⁾ 현장병행형은 디폴트로

15)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예로서는 Intergita, Inc의 2015년 주주총회 참조(<https://central.virtualshareholdermeeting.com/vsm/web?pvskey=IDCC>). 참조.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Microsoft사의 2015년 주주총회 참조(<https://central.virtualshareholdermeeting.com/vsm/web?pvskey=MSFT15>)

오디오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주총회 예로서는 MTS Systems Corporation 2016년 주주총회 참조(<https://central.virtualshareholdermeeting.com/vsm/web?pvskey=MTSC2016>)

16) Joann S. Lublin, Online Annual Meetings Begin to Click, The Wall Street Journal (2011. 11.14),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970203537304577032313764922458>.)

17) Intel, NVIDIA, 전자제품소매업을 하는 Best Buy, 온라인 증권사인 Charles Schwab, Warner Music Group 등(Donald Ainscow and Harba Dockery, Top Ten Things to Remember When Consider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Legal Resources (2 0 1 4 . 1 2 . 2 3) , <http://www.acc.com/legalresources/publications/topten/considering-virtual-shareholder-meetings.cfm>.

18) JetBlue Airways, NYSE Euronex, Ameriprise Financial, Sprint, Martha Stewart Living Omnimedia 등(위와 동일한 source)

19) Chaya Cooperberg, Why there are virtually no virtual AGMs, Listed Magazine (2015.7.8), <http://listedmag.com/2015/07/why-there-are-virtually-no-virtual-agms/>. Broadridge 사는 오디오방식의 전자주주총회 비용은 4,000달러 정도, 비디오와 기타 부수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주주총회 비용은 20,000-30,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Neil Stewart, The Debate abou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R Magazine (2010.10.22), <http://www.irmagazine.com/articles/proxy-voting-annual-meetings/16596/debate-about-virtual-shareholder-meetings/>).

20) 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 s. 132 (1) 주주총회는 정관에 의해 캐나다 국내로 규정된 장소에서 개최되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 국내에서 이사들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적용되는바, 정관에서 별도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고, 현장 대체형은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개최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에 참가하는 통신수단은 회의 중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덴마크

덴마크 회사법은 2003년 현장병행형뿐 아니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였다.²¹⁾ 현장병행형은 정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당연히 적용되지만(덴마크회사법 s. 77(1)), 현장대체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²²⁾ 정관을 개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덴마크회사법 §77(2)). 회사의 경영이사회는 전자적으로 개최될 주주총회에 이용될 전자시스템의 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전자적 시스템은 주주가 출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등 회사법상의 주주총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하고(덴마크회사법 s.77(3)(4)), 경영이사회가 회의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 전자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덴마크

(4) 정관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모든 참가자가 회의 중 상호간에 적절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한 전화, 전자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한 수단으로 총회에 참석한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이사나 주주가 이 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나 주주는 주주총회를 전적으로 회의 중에 상호간에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전화, 전자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21) 덴마크회사법 s. 77 (1)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이사회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권리와 함께 전자적 투표를 포함하여 총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총회에 전자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를 부분적으로 전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3)항과 (4)항 참조).

(2) 주주총회는 물리적으로 참석할 기회 없이 전자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전자적 수단(3)항과 (4)항 참조)에 의하여만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뜻의 주주총회결의에서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자적 매체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주총회결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결의와 이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106조가 적용된다.

(3) 회사의 경영이사회는 전부 또는 일부 전자적으로 개최될 주주총회에 이용될 전자시스템의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위의 요건과 주주가 전자적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참석절차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주주총회는 경영이사회가 회의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 전자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전자적 시스템은 주주가 출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이 법상 주주총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어떤 주주가 참석하였고, 그 주주가 가지는 자본금의 액과 투표권 및 투표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6) 주주총회 개최에 관련된 이 법의 모든 규정은 필요한 수정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개최된 주주총회에 적용된다.

22) 덴마크 회사법 s. 106조에 따른 결의이다(s. 77(2)).

회사법 s.77(4)). 덴마크에서는 아이슬란드 회사인 Straumur-Burdaras사가 2009년 현장병행형 주총을 개최하였고, Sparindex사는 2010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²³⁾

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93년 세계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주총회 개최하는 것을 인정하였는데²⁴⁾,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2년에 회사법을 개정하여²⁵⁾ "(a) 주주총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개최할 수도 있고 (b) 주주가 음성(audio), 음성과 영상(audio and visual), 또는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 기타 (a)항과 (b)항에 기재된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개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Companies Act 1993 s. 124 Schedule 1 clause 3), 음성, 음성과 영상 또는 전자통신을 통하여 참가하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족수 산정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동 Schedule 1 clause 4(4)). 그 결과 현장병행형뿐 아니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명시적으로 허용되었다.²⁶⁾ 위와 같은 음성, 음성과 영상 또는 전자통신을 통한 참가는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Schedule 1 clause(14)(1)(a)).

5. 터키

터키에서는 2011.1.13년 7월 개정 상법(2012.7.1 시행) 제1527조에서 전자적인 참가와 투표가 현장에의 출석이나 투표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²⁷⁾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고, 이에 기하여 『주식회사에서 전자매체를 통한 주주총회 참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12년 10월부터 현장병행형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터키에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이스탄불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는 MKK(Merkezi Kayit Kuruluş : 집중예탁 및 명의개서대행기관)가 운영하는 e-GKS(elektronik Genel Kurul Sistemi) 플랫폼을 이용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

23) Computershare, Georgeson, 2012 Canadian AGM Season Review, 21면, http://www.computershare.com/ca-en/business/cis/Documents/2012_AGM_Review.pdf.

24) Companies Act 1993 s.124 Schedule 1 clause 3.

25) Companies Act 1993 s. 124 Schedule 1 clause 3 : replaced on 31 August 2012. by section 11(1) of the Companies Amendment Act(No 2) 2012 (2012 No 60). 2012.8.31 발효되었다.

26) Spark 사가 2015년 11월 6일 개최될 2015년 주주총회를 현장병행형으로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27) Herguner Bilgen Ozeke, Turkey: Corporate Governa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ing Hand-In-Hand : Turkey's Impressive Example of Mandatory E-Voting, Mondaq (2014.7.24), <http://www.mondaq.com/turkey/x/329832/Shareholders/Corporate+Governance+And+Information+Technology+Going+HandInHand+Turkeys+Impressive+Example+Of+Mandatory+EVoting>.

28) 『주식회사에서 전자매체를 통한 주주총회 참가에 관한 규정』은 2012.8.28. 제정되어 2012.10.1 시행되었는데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운영과 기타 기술적 문제 및 보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회를 강제하였다는 점인데, 전자주주총회를 강제한 입법례로는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장상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둬으로써 전자주주총회를 선택할 수 있다.

주주는 사전에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으나, 전자적으로 참석하여 투표를 변경할 수 있다. 총회는 영상으로 스트리밍 되고 투자자와 그들의 지역 custodian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할 수 있다. 또한 동일인이 복수의 총회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총회에 관한 정보와 투표결과는 e-GEM 시스템을 통하여 공표되고, 15일을 넘지 않은 기간 내에 투표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MKK는 회의의 서류, 음성 및 영상 기록과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보존한다. 또한 회사는 MKK가 실시하는 일정 훈련을 수료하여 e-GKS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명하여 주총회 개최되는 동안 e-GKS 플랫폼에 로그인 하여 이를 사용하고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⁹⁾

터키에서는 비공개회사인 KPGM Turkey사가 2012.10.10 최초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³⁰⁾, Galatasaray Sportif A.S.사는 2012.10.30 최초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³¹⁾

III.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시각

2000년 6월 미국 델라웨어주법상 전자주주총회가 명시적으로 허용된 이래 동 제도에 대해서는 주주와의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시각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오히려 책임경영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립되고 있다.

1. 긍정적 시각

전자주주의 긍정적 효과로 언급되고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간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³²⁾ 이는 특히 주주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특히 국경을 넘은 주식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³³⁾ 회사는 회의장소를 준비하고 회의를 조직하

29) Herguner Bilgen Ozeke, op.cit.

30) Noam Noked, Istanbul Stock Exchanger Movers First on Mandatory Electronic Voting,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2.11.6) note 4, <https://corpgov.law.harvard.edu/2012/11/06/istanbul-stock-exchange-moves-first-on-mandatory-electronic-voting/#2>.

31) Ibid.

32) The Best Practice Working Group for Online Shareholder Participation in Annual Meetings, Guidelines for Protecting and Enhancing Online Shareholder Participation in Annual Meetings (2012.6)[이하 Guideline으로 인용한다].

33) Broadridge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비용절감 때문에 전자주주총회를 선택한다고 한다(Laurie Havelock, More Companies Turn to Online-only Shareholder Meetings, IR Magazine (2014.1.28),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쁜 이사나 경영진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³⁴⁾, 마찬가지로 주주들의 이동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탄소배출량을 저감하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³⁵⁾ 셋째, 주주의 주총참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사전 또는 실시간으로 주주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현장총회에 비해서 더욱 다양한 질문이 제출되어 주주총회에서 논의가 확장되고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으로는 현장총회에서는 불가능한 익명의 질문도 가능하고, 현장에서보다 더 대담하고 예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도 한다.³⁶⁾ 또한 주주총회와 함께 FAQ와 같은 수단으로 회사측의 의도를 주주에 전달하면,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확대될 수 있다. FAQ에 입력된 주주의 질문내용과 경향과 의결행동간의 관련을 분석하면, 그때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의문과 불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장래의 경영판단과 주주총회의 운영에 역할을 할 것이다.³⁷⁾ 넷째, 전자주주총회는 회사가 첨단기술에 친숙하다는 인상을 주어 회사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현장주총에서는 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박수나 손을 드는 방법 등으로 결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결·부결 결과만으로는 의안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를 평가할 수 없다. 전자주총에서는 투표결과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다.

2. 부정적 시각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주들을 소외되고, 시스템의 오류나 해킹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 외에 특히 현장대체형 전자주총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에서는 경영진과 주주의 대면접촉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소통이 어려우므로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된 총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과적으

<http://www.irmagazine.com/articles/proxy-voting-annual-meetings/20018/more-companies-turn-online-only-shareholder-meetings/>). Inforte 사는 현장총회는 20,00달러 정도가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전자주주총회는 2,000달러가 소용되었다고 한다(Lisa Fairfax,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Reconsidered", 40 Seton L. Review 1367, 1391).

34) Donald Ainscow and Harva Dockery, Top Ten Things to Remember When Consider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2014.12.23), <http://www.acc.com/legalresources/publications/top10/considering-virtual-shareholder-meetings.cfm?makepdf=1>.

35) Guideline, p.6.

36) Tom Klein, Promoting Shareholder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Corporate Compliance Insights (2011.10.2), <http://corporatecomplianceinsights.com/virtual-shareholder-meetings/>.

37) 岩村充, 坂田繪里子, “わが国における株主總會電子化の可能性と課題”,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 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78면.

로 오히려 주주들의 주총에의 참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³⁸⁾ 현장총회에서는 참석 주주가 발언하기 전에는 의장도 그 질문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의장의 의사진행이 참석한 주주들의 감시를 받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이메일 등으로 미리 또는 실시간 제출된 질문이 다른 총회참가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어떠한 질문에 응답할 것인가를 의장이나 의장을 보조하는 임직원이 질문의 내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들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우호적인 질문만 선택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질문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므로³⁹⁾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도 불가능하다. 사전에 제출받은 질문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각본에 따른 응답을 하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또한 경영진과 주주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주주간의 소통도 감소시킨다.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의는 시스템을 통하여 회사 측에 전달되고, 다른 주주들은 이를 알 수가 없다.⁴⁰⁾ 이 때문에 회사가 모든 주주들이 제출된 질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⁴¹⁾, 아직까지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한 회사는 없다.

또한 회의장의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참가방식이 오디오인 경우는 물론이고 비디오의 경우에도 카메라가 비추는 곳이 한정되는 등의 이유로 바디랭귀지 내지는 경영진의 태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없다.⁴²⁾ 이는 의결권행사의 참고가 될 정보의 양이 부족해짐을 의미한다.⁴³⁾

위와 같은 우려 때문에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CII)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실주총의 보완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⁴⁴⁾ 미국에서는

38) Lisa Fairfax, op.cit., p. 1391-1392; CII deputy director Amy Borrus 발언(Laurie Havelock, More Companies Turn to Online-only Shareholder Meetings, IR Magazine (2014.1.28), <http://www.irmagazine.com/articles/proxy-voting-annual-meetings/20018/more-companies-turn-online-only-shareholder-meetings/>).

39) Symantech사예의 2010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31명의 주주가 참여하였다. 기존에는 4-6명의 주주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 총회에서 경영진은 주주의 질문 중 2개만 응답하였는데, 주주 질문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Virtaul Annual Meetings Have Real-world Problems. Business Insider (2011.12.2), <http://www.businessinsider.com/virtual-annual-meetings-have-real-world-problems-2011-12>).

40) Lisa Fairfax, op.cit, p.1394.

41) Elizabeth Boros, op.cit., ¶ 17.

42) Jena Mcgregor, More Companies are Going Virtual for their Annual Shareholder Meetings, Washington Post (2015.3.17)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on-leadership/wp/2015/03/17/more-companies-are-going-virtual-for-their-annual-shareholder-meetings/>)

43) 大彬謙一, 岩村充, “株主總會の電子化とその審議の實質”,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 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84면.

44) CII Shareholder Meetings Policy § 4.7 전자총회(Electronic Meetings) : 회사는 주주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전통적인 회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격통신에 의한 주주총회(소위 “virtual” meetings)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에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비

Intel사가 2009년에 최초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2010년에는 현장병행형으로 선회하였으며⁴⁵⁾, Symantec사도 Fortune 500 회사 중 최초로 2010년 총회를 현장대체형으로 개최하였다가 다음 해에는 병행형으로 변경하였다.⁴⁶⁾ P&G는 현장 대체형 주주총회의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지만 주주들의 반발을 감안하여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⁴⁷⁾ 최근 Hewlett Packard는 2015. 3. 주주총회를 현장대체형으로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 중 최대 규모인데, 이 역시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⁴⁸⁾

한편 전자주주총회는 회사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며 투표결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주주총회에서는 사전에 위임장을 수여하여 의결권이 대리행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엔 총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임장을 수여하지 않거나, 수여한 위임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투표결과의 예측이 어려워지므로⁴⁹⁾, 회사에서는 항상 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로 개최하지는 않고 간헐적으로 이용함이 보통이다.

IV.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제도적 정비 : 전자주주총회 허용 관련 규정

주주총회 자체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설령 해석상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전자주주총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입법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법 전자주주총회

추어 보면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참석한 주주들에게 직접 참석한 주주들과 동일한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가 동일한 정도고 접 된다면 원격으로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물리적으로 참석한 주주와 동등한 정도로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2015. 4. 1. 최종 수정). (http://www.cii.org/corp_gov_policies)

45) Neil Stewart, The Debate abou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R Magazine (2010.10.22), <http://www.irmagazine.com/articles/proxy-voting-annual-meetings/16596/debate-about-virtual-shareholder-meetings/>.

46) Ibid.

47) Jena Mcgregor, More Companies are Going Virtual for their Annual Shareholder Meetings, Washington Post (2015.3.17),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on-leadership/wp/2015/03/17/more-companies-are-going-virtual-for-their-annual-shareholder-meetings/>.

48) Ross Kerber, HP Moves Annual Meeting Online-only as CEO Face Time Fade, Reuters (2015.2.12) ,<http://www.reuters.com/article/us-hp-meeting-internet-idUSKBN0LG2QI20150212>; Alexandra Roman, What HP's Virtual Annual Shareholder Meeting Means for Remote Meetings, Convene (2015.3.20), <http://www.azeusconvene.com/virtual-annual-shareholder-meeting-means-means-remote-meetings/>.

49) Lisa Fairfax, op.cit.. p.1395.

법제화의 경우에 고려할 사항에 관하여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현행법이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에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있고, 한 유형에서만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임의적 제도 또는 의무화 여부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이를 임의적 제도로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현장대체형은 모두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고 있고, 현장병행형의 경우에도 터키를 제외하고는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제도는 2000년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서 아직 개최된 예도 많지 않고, 또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도 아직 확립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회사의 상황이나 의안의 종류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장대체형을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총회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장병행형은 주주의 참여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회사에게 추가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비용과 효익에 대한 정밀한 비교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2. 정관상 근거규정 요부

전자주주총회를 임의적 제도로 두는 경우에 조문의 형식을 ① default rule로 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할 것인지(opt-out) 아니면 ②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opt-in)도 결정되어야 한다.

텔라웨어주는 ①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회사에서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자 하면 기본정관이나 부속정관을 변경하여 일정한 물리적 장소를 총회소집지로 규정하여야만 한다.⁵⁰⁾ 캐나다(CBCA s. 132(1))도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뉴질랜드에서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Schedule 1이 적용되므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도 인디애나주와 같이 회사의 기본정관이나 부속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Ind. Code Ann. §23-1-29-1(d)) ②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예도 있다.⁵¹⁾

덴마크는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을 구분하여 취급한다. 현장병행형에 대해서는 opt-out 방식을 택하고(덴마크회사법 §77(1)), 현장대체형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50) Arizona, California, Colorado, Illinois, Kentucky,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ssouri, Nevada,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Tennessee, Utah, Vermont, Wyoming이 이러한 입장이다(Lisa Fairfax, op.cit., p.1381).

51) Hawaii, North Carolina, Minnesota, Montana, North Dakota, Ohio, Virginia와 West Virginia가 이러한 입장이다(Lisa Fairfax, op.cit., p.1382).

승인결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덴마크회사법 §77(2)) opt-in 방식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3. 전자주총소집 여부에 대한 이사회와 주주의 권한배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opt-in 방식이건 opt-out 방식이건, 상법상 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되는 경우에 이사회와 주주 간에 전자주총 소집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i) 전자주주총회를 이사회가 원하는 경우에만 소집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회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ii) 이사회가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소집권한을 얼마나 제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① 델라웨어주는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을 불문하고 이사회에 '전적인 재량(sole discretion)으로' 원격통신을 통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DGCL §211(a)). '전적인 재량'이라는 문언은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이사회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즉, 주주들이 정관을 변경하여 회사가 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방식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주주들의 요구로 전자주주총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⁵²⁾ ② 반대로 델라웨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정관에 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방식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사가 주주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가 실시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① 델라웨어주 등은 이사회에 소집결정에 별도의 절차나 요건을 부가하지 않아 이사회에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② 한편 Minnesota주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Minn. Stat. Ann. §302A.436 (2)). 그러나 일단 통지를 한 이후에는 전자주주총회 소집여부가 이사회에 재량이라는 점에서는 델라웨어와 마찬가지로이다. 통지규정은 전자주주총회 허용 여부가 opt-out 방식으로 규정된 경우에, 전자주주총회 개최 전에 미리 알고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Maryland주는 주주가 일정한 소집장소를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Md. Code Ann. Corps §2-503(b)(2)). California주에서는 이사회가 전자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사회에 결정 외에도 현장대체형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Cal.Corp. Code §600). Maryland주는 전자주주총회를 금지하려면 주주의 적극적 거부행위가 필요하고, California주에서는 회사가 주주의 동의를 얻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주주가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현장대체형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없다는 점은 공통된다. 반면 델라웨어주에서는 전자주총 소집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52) Lisa Fairfax, op.cit., p. 1372.

4. 허용범위

(1) 회사의 성격에 따른 허용범위 제한

상법상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하여 허용여부를 달리할 것인가도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부분 입법례에서는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Massachusetts나 Montana주에서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허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Massachusetts는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을 모두 허용하지만, 공개회사에서는 현장병행형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³⁾ Montana 주는 현장대체형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현장병행형도 주주가 50인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한다.⁵⁴⁾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자주주총회가 효율적인 주주참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각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주 수가 많은 회사에서 오히려 지리적 제약으로 주주참가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전자주총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일부주주를 대상으로 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전체 주주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만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가도 문제될 수 있다. 2010년 개정된 모범회사법에서는 특정종류주식의 주주에게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 중 일부에게만 인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⁵⁵⁾

5. 전자주주총회 허용 전제로서 ‘소집지’ 규정과의 조화

상법 제364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집지’란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쉬우므로 소집지 규정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가상공간에 개최되는 전자주주총회가 여기에 저촉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1) 복수의 회의장에서 화상회의

종래 주주총회에 전자적 기술을 이용하는 것 중 화상회의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즉, 참석 주주가 많아서 하나의 회의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수의 회의장을 두고 각 회의장을 화상·음성전달기술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물리적으로 주주가 하나의 장

53) Mass. Gen. Laws. ch. 156D §7.08.

54) Mont. Code Ann. §35-1-516.

55)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7.09 Official Comment.

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주주와 이사 간의 소통을 다른 주주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평가로는 제1회의장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제2회의장이 주주도 통신기술에 의해 제1회의장에서의 심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⁵⁶⁾

영국법원은 복수의 회의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각 회의장을 음성과 화상 수신 장치로 연결하여 다른 회의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최된 주주총회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고⁵⁷⁾ 2009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었다.⁵⁸⁾

(2)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관해서는 소집지에 관한 규정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⁵⁹⁾ 일단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곳에서 현실주주총회가 개최되므로 소집지 규정은 충족한 것이고,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주주들은 비록 물리적으로 회의장에 소재한 것은 아니나 위의 화상회의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므로 화상회의 허용의 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① 소집지 규정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⁶⁰⁾ ② 소집지에 관한 조문이 이사가 자의적으로 소집지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주의 총회출석 및 권리행사기회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해석과⁶¹⁾ ③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는 문언에서부터 물리적 장소를 소집지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⁶²⁾

56) 大彬謙一, 앞의 논문, 89-90면; 弥永眞生, “電子的 手段による株主總會召集通知等と議決權行使”, 『商事法務』 1577호 (2000), 24-25면; 弥永眞生, “EUにおける電子株主總會の可能性”,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 神田秀樹 編제)』, 弘文堂 (2003); 神作裕之, “株主總會のIT化”, 『民商法雜誌』 126권 6호 (2002), 69면 이하. 이와 같은 실무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로는 大阪地判 平10・3・18 判時 1658-180.

57) Byng v. London Life Ass'n Ltd., 1990 Ch. 170, 183 (C.A.)

58) 각주 10) 참조.

59) 大彬謙一, 앞의 논문, 89-90면; 小塚莊一郎, “株式會社運營の電子化・IT化”, 『法教』 264호 (2002), 42면; 神作裕之, 앞의 논문, 69면 이하. 장영수(2015), 187면.

60) 小塚莊一郎, 위의 논문, 42면.

61) 弥永眞生, “電子的手段における株主總會召集通知と議決權行使”, 『商事法務』 No. 1577 (2000), 25면.

62) 岩村充, 坂田繪里子, 앞의 논문, 68면; 권중호, 앞의 논문, 115면(“신의칙에 반하거나 이른바 제3자 효의문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김은경, “주주총회개최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법적 과제_인터넷상의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0권 2호 (2003), 259면(총회의 소집장소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정관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주주총회를 결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소적 개념에 이 규정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견해가 정관에 현장대체형주주 근거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장영수(2016), 187면.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법 제364조와 같은 소집지 규정의 해석상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으나, 법적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법제화 할 때에는 소집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6. 출석간주 규정

주주총회에 관해서는 ‘출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결의정족수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386조, 371조, 434조),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368조의3)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368조의4)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집지’ 규정과 결합하여 생각하면 ‘출석’이란 일정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물리적 장소가 아닌 인터넷등 가상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자주주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V.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제도적 정비 : 전자주주총회 운영 관련 규정

1. 출석

(1) 참가자 신원확인

주주나 그 적법한 위임장을 보유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장 입장시에는 주주 및 대리권확인절차를 거치게 마련인데, 전자주주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주 또는 그 대리인 여부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텔라웨어주는 확인방법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총회 출석이 간주될 수 있는 유효한 전자주주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 또는 위임장보유자임을 확인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DGCL §211(a)(2)(i)).”는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회사법도 주주총회에 대한 전자적 참가 시스템은 “주주가 참석하였고, 그 주주가 가지는 자본금의 액과 투표권을 및 투표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77 (4)).”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olorado주 회사법이나 기타 전자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입법례에서는 주주나 위임장보유자의 확인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 전자투표에 관하여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368조의4 3항)”고 규정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13조 1항). 주주확인방법을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의 보안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와⁶³⁾ 주주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발부한 패스워드나 ID번호의 입력을 요구할지는 회사의 IT능력과 직결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성(주주의 진정성)에 대한 중시는 자칫하면 시스템의 편리성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인확인을 위해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회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⁶⁴⁾ 있다.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신원확인에 관해서도 동일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주 등의 자격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일반원칙에 따라 주주나 위임장보유자의 자격 확인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회사법상 주주 확인의무 규정이 필요할지 의문이고, 이러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방법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2) 출석여부의 판단

일정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개최되는 현장총회에서는 주주가 회의장에 입장 및 퇴장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자주주총회에서는 무엇을 이러한 입장 및 퇴장과 동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시스템에 로그인 및 로그아웃 하는 것을 입장 및 퇴장과 동시하여 출석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⁶⁵⁾, 이 경우 현장총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장총회에서는 회의장에 입장한 이상 퇴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회의장에 주주가 존재하여 의사진행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입장과 퇴장 여부로 총회에의 출석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로그인만 한 채 단말기 등이 있는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므로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실제 의사진행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 ‘출석’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총회결의의 유효성에의 의심과 결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 조작을 한 이상 로그아웃 할 때까지의 사이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라 하더라도 총회에 참가를 계속하고 있는

63) 정완용, “바람직한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방안”,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4), 393면; 정경영, 이세영,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후 주주총회의 변화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3권 제1호 (2011.4), 335면; 정쾌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2), 337면.

64) 권종호, 앞의 논문, 131면; 김성탁, “전자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전자화시대에 있어서 기업지배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비교사법』 제11권 제3호 311면 (2004), 311면; 김순석, 앞의 연구보고서, 156면; 홍복기,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3), 211면.

65) 홍복기, 위의 논문, 203.

상태라고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⁶⁶⁾

또한 전자주주총회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장총회에 비하여 출석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결의시에 정족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장총회에 있어서도 개개의 의안에 관해 결의직전에 주주의 총회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결권 행사자를 확정하고 총회결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의 제약, 예컨대 의장이 의안에 관한 결의에 들어간다는 선언을 한 후에는 로그아웃 조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약은 가능하다고 본다.⁶⁷⁾ 그러나 일단 로그인을 하면 주주총회 개최 중에는 로그아웃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는 경우와 같이 총회 개최 중 주주의 퇴장을 사실상 불허하는 등 주주의 행동을 부당히 제약하는 것은 현장총회에 출석한 주주와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운영의 안정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는 회사 측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⁸⁾

상법은 의사진행의 구체적 부분에까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까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정관이나⁶⁹⁾ 회의운영규칙에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출석의 경합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현장총회에 참여하였다가 전자주주총회로 참가형태를 변경하든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터키에서는 전자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총일 전일 오후 9시까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e-GKS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참가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⁷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총회 참석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설령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였다고 하여도 현장총회의 입장처리는 사람 손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상 현실주총과 전자주총의 정족수를 잘못 세거나 의결권이 이중으로 행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가형태 변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및 의결권의 이중행사가 발행한 때 등에 현장총회와 전자총회에서의 행위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가를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⁷¹⁾

66) 岩村充, 坂田繪里子, 앞의 논문, 71면.

67) 柴田和史, 神田秀樹, “電子株主總會への展望”,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 神田秀樹 編)』, 弘文堂(2003), 138-139면; 岩村充, 坂田繪里子, 앞의 논문, 71-72면.

68) 岩村充, 坂田繪里子, 위의 논문, 71-72면.

69) 전자적 수단에 의한 참가자의 입장·퇴장의 산출과 같이 주주의 권리에 직접 관련되고 또 주주의 필요성이 큰 사항에 관해서는 정관 이외의 의사운영규칙 등에 정할 수 없고 내용이 합리적인 것임을 전제로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견해이다(岩村充, 坂田繪里子, 위의 논문, 71면 각주 10).

70) Herguner Bilgen Ozeke, op.cit.

71) 岩村充, 坂田繪里子, 위의 논문, 72면.

2. 의사에의 참여 : 회의체성

(1) 참가 방식

주주총회는 본래 주주가 직접 회의체로서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제·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의사를 형성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주주총회의 이러한 특성을 ‘회의체’라고 표현하면서, 서면투표제도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회의체를 본질로 하는 주주총회제도와는 상반된다는 문제점이 서면투표제도 도입시 지적되었다.⁷²⁾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하므로 서면투표의 경우에 비해서는 회의체성의 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전자주주총회에서 ‘회의체’성이 현장총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틀을 같이 하고, 전자주주총회제도 법제화에서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주총회의 회의체성이 무엇인가가 문제되는데, 주주총회에서의 심의 및 결정의 구조는 이사회와는 달리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이사회에서는 각자 경영의 전문지식을 가진 이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토의하고, 각각의 지식과 경험이 결집된 결과, 두수주의에 의해 경영방침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주주총회에서는 각 주주의 지식과 정보량 및 의결권수가 각각 다르고, 심의는 주주상호간의 직접적인 토의보다도 오히려 각 주주로부터 경영진에게로의 질문·의견표명과 경영진에 의한 응답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각 주주는 경영진과 다른 주주 간의 의견교환에 영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 결과 이사회에서는 구성원인 이사 상호간의 직접적인 토론의 확보가 중시되는데 반하여⁷³⁾, 주주총회가 회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① 참가주주가 이사 등에 대해서 질문·의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② 참가주주의 질문·의견표명과 경영진의 응답의 내용을 다른 주주도 동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의 참고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⁷⁴⁾

이러한 주주총회의 회의체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주주총회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회사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 주주 또는 위임장보유자가 의사진행과 실질적으로 동시에(substantially concurrently) 이를 읽거나(read) 또는 들을 수(hear) 있도록 하는 등 총회에 참가하고 의안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DGCL §211(a)(2)(ii)).”고 규정하고 있다. 모범회사법도 델라웨어와 유사한 입장이다(MBCA §7.09(b)). Colorado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주주들이 ‘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상호간에 들을(hear) 수 있어야 한다(Colo. Rev. Stat. §7-108-101).’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회사법은 “전화, 전자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참가자가 회의 중 상호간에 적절하게 의견교환

72) 前田重行,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주주의 액세스와 그 수단—서면투표제도について”, 『현대기업법의 전개(竹内昭夫先生환력기념)』, 有斐閣 (1990), 611면; 鮎瀬典夫, 앞의 논문, 14면.

73) 鮎瀬典夫, 위의 논문, 20면.

74) 大彬謙一, 앞의 논문, 88-89면; 鮎瀬典夫, 위의 논문, 20면.

(communication)을 할 수 있고, 회사가 그러한 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CBCA s. 132(4)).”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음성(audio), 음성과 영상(audio and visual), 또는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 방식을 통하여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Companies Act 1993 s.124 Schedule 1 clause(3)(b))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는 “전자적 시스템은 주주가 출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이 법상 주주총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덴마크 회사법 §77(1))”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회의체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전자주주총회에 요건에 관하여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총회의 진행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및 이에 기한 의결권 행사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견교환 방식은 음성과 영상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면 보다 현실주주총회에 가까워 질 수 있겠지만 결국 비용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현재 입법례에서는 일치하여 음성만으로 참가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의사진행의 공정성 확보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자주주총회에서는 현장총회보다 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여지가 크다. 현장총회에서도 의사운영에 관해서는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상법 제266조의2 2항)”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주주의 질문권이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회의체의 일반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다.⁷⁵⁾ 마찬가지로 전자주주총회에 있어서도 의사운영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덴마크회사법에서는 “경영이사회가 회의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 전자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다(§77(1)(4)).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에 의사진행의 불공정은 결의방법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바, 실제로는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3) 주주총회 검사인 제도

현행 상법상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367조 2항). 이는 2009년 상법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주총회 정족수의 충족, 전자문서의 인증확인, 전자투표의 마감시한 체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도입된 것이다⁷⁶⁾ 현장대체형 총회에 관해서는 현장총회의 경우보다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쉬우므로 현재의 총회검사인제도에서 더 나아가 상시적인 제도로서 선임을 강제할 것인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⁷⁾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의사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7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2015), 302면.

76)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회사편)』, (2006.12), 437면. 총회검사인제도에 관해서는 김순석, “2011년 개정상법상 도입된 총회검사인 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CG Review』 vol. 66 No.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1·2) 참조.

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의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이지만 의사운영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⁷⁸⁾

3. 전자투표제도와 의 관계

현행 상법상 주주가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있는 방법으로 전자투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현행 상법상으로는 전자투표는 주주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368조의4 3항), 전자투표 행사기한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정하였다(시행령 13조 2항 2호).⁷⁹⁾ 현행법상 허용되는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나, 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되면 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하여 의사에 참여하고 의안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투표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철회·변경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⁸⁰⁾ 현장주주총회가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실시간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⁸¹⁾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기 실시한 전자투표에 대한 철회·변경을 허용할 경우 특정 의안에 대해 반대표시를 한 주주에게 찬성권유를, 반대로 찬성표시를 한 주주에게 반대권유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이 문제는 위임장권유규제를 통해 통제하여야 할 것이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자투표 기간은 물론이고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철회·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내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⁸²⁾

77) 岩村充, 坂田繪里子, 74면.

78) 권종호, 앞의 논문, 124면; 홍복기, 앞의 논문, 202면은 선임강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79) 전자투표의 시한을 총회 전일로 제한한 것은, 전자투표내역의 송·수신 오류 등 시스템 리스크 및 업무처리의 번잡 등으로 주주총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정완용, 앞의 논문, 394면).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통해서 결정의 수집이 즉시 가능한 점을 생각할 때에 주주권의 자유롭고 편리한 행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정경영, 이세형, 앞의 논문, 342면).

80) 김순석, 앞의 보고서, 303면, 정경영, 이세형, 위의 논문, 343면. 장영수(2015), 197면; 황현형,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법학논총』 제30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338-389면.

81) DGCL §211(a)(2).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하여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만이 인정될 뿐이다. 우리법과 비교해 볼 때 서면투표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원격통신에 의한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주주총회와 결부시켜서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정경영,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2004), 109면), 따라서 총회 불출석한 주주의 전자투표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실시간 전자투표 중복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4. 전자적 회의의 기록 보관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주주총회에 관해서는 의사운영의 공정성이 문제될 여지가 크므로 의사에 관한 데이터를 보존하여 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델라웨어주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주 및 위임장보유자의 원격통신을 통한 투표 및 기타 행위의 기록 보존할 것을 전자주주총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DGCL §211(a)(2)(iii)).⁸³⁾ 미국의 주회사법이나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데이터 보존은 회사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법상 보존의 무에 관해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주주들이 제출한 질문의 내용과 입력시간을 확실하게 기록하여두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입력된 질문 중 회의운영 과정 중 논의할 질문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무작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필요한 경우에 감사가 가능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⁸⁴⁾

82) 장영수(2015), 198면; 황현형, 앞의 논문, 339면.

83) 16개주가 델라웨어와 같이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Lisa Fairfax, op.cit., p.1379).

84) 岩村充, 坂田繪里子, 앞의 논문, 76면.

제2세션

온라인 보험판매회사제도 사례와 개선방안

발표자 : 박선영 연구위원(보험연구원)

토론자 :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고기호 부장(삼성화재)

사회자 : 최병규 교수(건국대)



온라인 보험판매회사제도 사례와 개선방안

2016.2.19(금)
박선영

kiri 보험연구원

1. 보험산업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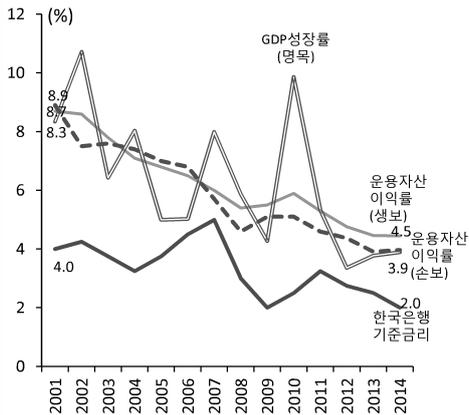
2. 국내 현황
3. 해외사례
4. 인터넷 채널 성장전망
5. 법규상 비교
6. 쟁점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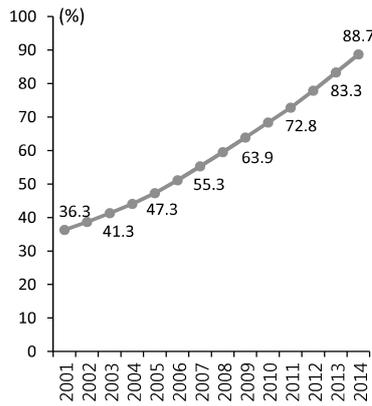
저금리·저성장, 고령화, 디지털시대

- 저금리·저성장 환경: 보험산업 성장 둔화와 수익성 하락 예상
- 고령화 진전: 소비자 니즈 변화에 따라 신상품 개발 요구 확대
- 정보통신기술 발달: 새로운 사업 및 판매채널 구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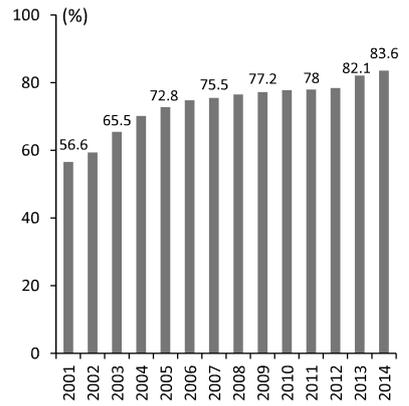
저금리·저성장



노령화지수



인터넷 이용률



주: 노령화지수는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백분율임.
 자료: 한국은행, 보험동향, 통계청, KISA.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

-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으로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2015년 11월 총 33개 보험회사, 217개 상품으로 출발
 - 가격비교공시 사이트 등 정부의 금융상품비교공시 기능 강화
 - 보험 청약 단계에서의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활성화 등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비대면채널 점진적 확대

-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
 - 2014년 기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액은 총 69조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4.6% 차지
-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2014년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60조 원으로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액의 87% 차지

1. 보험산업 환경 변화

2. 국내 현황

3. 해외사례

4. 인터넷 채널 성장전망

5. 법규상 비교

6. 쟁점 및 개선방안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의 유형 분류

기존 보험사의 사업부 설치

- 기존 보험회사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험 판매
- 기존 조직의 브랜드 파워 및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강점
- 기존 대면채널과의 채널 갈등 발생 여지는 단점

온라인 전용 보험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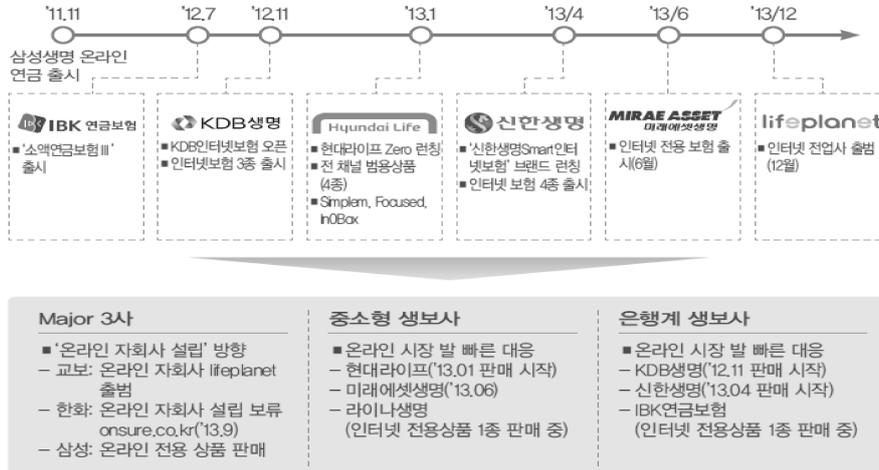
- 기존 보험회사의 자회사 형태나 신규 진입 형태 양존
-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제외하면 기존 보험회사 진입보다는 진입장벽 낮은편
- 회사 인지도가 낮아서 초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격비교사이트 활용

- “보험다모아” 나 가격비교사이트(어그리게이터) 등이 해당
- 여러 회사의 상품비교를 통해 가격경쟁 가속화
- 상품경쟁력 확보가 관건
- 사이트 이용 수수료 부담 주체에 따라 고객부담 증가 가능성

국내 온라인 보험 판매 현황

- 2011년 말부터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IBK연금보험, KDB생명, 현대라이프,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이 온라인 시장에 진입함.
-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주요 보험상품으로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인 정기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음.



Major 3사	중소형 생보사	은행계 생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회사 설립' 방향 - 교보: 온라인 자회사 lifeplanet 출범 - 한화: 온라인 자회사 설립 부류 onsure.co.kr('13.9) - 삼성: 온라인 전용 상품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장 발 빠른 대응 - 현대라이프('13.01 판매 시작) - 미래에셋생명('13.06) - 라이나생명 (인터넷 전용상품 1종 판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장 발 빠른 대응 - KDB생명('12.11 판매 시작) - 신한생명('13.04 판매 시작) - IBK연금보험 (인터넷 전용상품 1종 판매 중)

자료: 이근영 외(2014. 11).

교보 라이프 플래닛 운영현황

- 2013년 12년 출범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국내에서 유일한 온라인 전업 보험회사임.
- 판매 중인 보험상품으로는 사망보장을 위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등이 있음.

(단위: 백만 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보장성	수입보험료	11	521
	비중	14.5%	21.1%
저축성	수입보험료	66	1,954
	비중	85.5%	78.9%
합계		76	2,475

자료: 월간생명보험통계

구분		2013	2014
생존보험	초회	46	175
	2회이후	20	1,668
	2년도이후	0	63
	소계	66	1,905
사망보험	초회	9	79
	2회이후	2	432
	2년도이후	0	10
	소계	11	521
생사혼합보험	초회	0	17
	2회이후	0	33
	2년도이후	0	0
	소계	0	49
합계		76	2,475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 중에서 온라인채널을 통한 가입규모는 전체의 5% 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같은 온라인 채널 증가세에는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증가의 기여도가 큼.
- IT기술 발달에 따라 판매채널 유형 및 보험종목에 대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형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온라인자동차보험 전용사들로 AXA손보, 더케이,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등이 있음.
- 현대해상이 100% 출자한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온라인 판매만을 조건으로 2006년 3월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입함.

(단위: 백만 원, %)

손해보험 온라인채널 모집현황

	CM	합계	비중
2012년 12월	423,501	51,587,107	1.63
2013년 12월	656,819	53,721,025	2.43
2014년 12월	1,105,432	76,577,504	2.87
2015년 10월	1,174,935	63,579,767	3.68

자료:손해보험협회월간통계

kiri 보험연구원

9

수요측면: 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5년)

- 현재 인터넷 채널을 통한 가입자 수준은 높지 않음.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1.6% 이하로 저조함.
 - 손해보험 또한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7.8%로 낮은 편임.
- 향후 직판채널의 선호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채널 성장성 측면에서 주목됨.
 -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각각 현재 가입률 1.6%와 7.8% 보다 높은 8.8%와 17.2%로 높게 나타남.
- 20~30대 젊은 층의 인터넷 채널선호도가 두드러짐.

(단위: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20대	70.6	31.2	31.2	0.9
30대	76.4	24.8	23.6	1.8
40대	83.2	16.8	14.1	2.2
50대	88.4	11.0	9.8	1.8
60대 이상	89.0	4.4	3.7	1.5

kiri 보험연구원

10

1. 보험산업 환경 변화
2. 국내 현황
3. 해외사례
4. 인터넷 채널 성장전망
5. 법규상 비교
6. 쟁점 및 개선방안



일본 사례: Nextia Life(구 SBI AXA 생명보험)

- 온라인 금융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SBI Holdings와 글로벌 보험그룹 계열인 AXA Japan이 협력하여 2008년 4월에 설립한 온라인 생명보험회사임.
- 종신, 의료, 정기, 소득보상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취급함.
- 보험상품이 단순하게 설계되어 온라인상으로 모든 판매 과정이 완결되도록 표준화되어 있음.
- 연간 수입보험료는 FY2010 132억 3,000만 원으로 FY2009 대비 189.8% 증가
- 손익측면에서 살펴보면 FY2008에 4억 엔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점차 손실 규모가 증가하다가 FY2012에 대폭 감소하였으나 FY2013 다시 증가함.

(단위: 백만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3/4)	
수입보험료	6,972	13,230	14,504	
신계약	건수	12,977	13,831	12,108
	신계약액	1,892,058	1,592,822	1,092,756
보유계약	건수	16,268	27,156	36,619
	보유계약액	2,330,958	3,571,820	4,379,984

주: 1) FY2011 3/4분기는 누적치임.
 2) 환율 100엔당 1,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Nextia Life; 황진태(2012. 5) 재인용.

(단위: 백만 엔)

연도	당기순손실
FY2008	△470
FY2009	△725
FY2010	△1,046
FY2011	△1,741
FY2012	△217
FY2013(Q2)	△1,413

자료: Nextia Life; 정세창(2014. 4) 재인용.

일본 사례: 라이프닛 생명

-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가 아닌 독자적인 생명보험회사로 2008년 6월에 출범함.
- 보험료 원가공개를 통한 저가 정책 및 상품 단순화 추구
- 초기 시스템 투자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여전히 손실이 발생
- 순수 보장형인 사망보험(정기), 민영의료보험(종신/정기), 소득보상보험(정기) 등 총 4종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 특약을 배제한 주계약만으로 구성된 단순상품 설계
 - 온라인상으로 보험료 계산이 용이하고, 보험가입까지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음.
 - 보험료 원가를 최초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상품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함.

(단위: 백만 엔)

		FY2010	FY2011	FY2012	FY2013
신계약	건수	42,214	60,725	60,685	46,237
	증가율	119%	44%	-0.1%	-24%
당기순이익		△834	△900	△126	△2,194

자료: 라이프닛생명 유가증권 보고서 재인용

kiri 보험연구원 13

일본 사례: 라이프닛 생명

- 2006년 금융청의 보험상품 심사간소화, 부가보험료 자유가 시행됨에 따라 생보시장 가격 경쟁 시작
- 일본 라이프닛은 2008년 11월 21일 업계 최초로 보험료 원가공개
- 원가공개를 통한 가격파괴 정책으로 업계 가격경쟁 가속화
 -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 원가 공개
 - 일본 정부는 부가보험료의 경우 개별 보험회사에 재량권 부여

(단위: 엔)

**일본 정기보험
보험료 비교
(30세 남성, 10년납,
3,000만 엔 기준)**

구분	월보험료(A+B)	순보험료(A)	부가보험료(B)	B/(A+B) 비율
SBI악사생명	3,450	2,669	781	22.60%
라이프닛생명	3,484	2,669	815	23.40%
메이지야스다	6,990	2,669	4,321	61.80%
스미모토생명	7,410	2,669	4,741	64%

주: 2009년 3월 14일 기준 비교자료
자료: "라이프닛생명 이야기", p.228 인용

kiri 보험연구원 14

중국 사례 : 중안보험[衆安保險]

- 중안보험은 2013년 2월에 설립한 중국 최초의 온라인 보험회사임.
 - 중국 최대 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동사의 최대주주로 지분율 19.9%
 -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 텐센트, 보험사 평안그룹이 공동 2대 주주로 지분율 각각 15%
 - 나머지 주주 중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업체 씨트립 등이 있음
- 2014년 수입보험료는 7.4억 위안(1,295억 원), 이익은 3,341만 위안(58.5억 원) 기록
 -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자체 유통망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유치하고, 평안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업무를 담당함.
 - 중안보험은 인터넷 판매를 보완수단으로 사용하는 보험사와 달리 인터넷을 유일한 판매채널로 운영
 - 전통적인 보험상품뿐 아니라 온라인 가상재산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보증보험', '인터넷결제 안전보험' 등을 판매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침.
- 2014년 11월 9일까지 누적 보험계약 건수는 6억 3,000만 건이며, 고객 수는 1억 5,000만 명을 넘어섬.

이탈리아 사례: Genialloyd

소셜 미디어 활용 해외사례

- Facebook, LinkedIn, Twitter, Google+ 등 소셜(모바일)미디어 활용도 높아짐.
-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수된 고객정보를 보험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
- 신채널을 교차 및 상향판매(cross-selling & up-selling)가 가능하도록 활용

소셜 미디어 활용사례: Genialloyd

-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해 해당 보험료 수입이 2009~2011년 사이 매년 24.2% 신장
-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집된 모든 질문과 불만사항을 일원화된 통합시스템 관리
- "Super Fast Quote"는 고객들이 Facebook상에 제공된 자동차보험 가격에 대해 "like"를 누르면 자동으로 보험가입 링크로 넘어가며 지불시스템을 통해 최종가입 확정
- Facebook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4%에 해당하는 가격할인 혜택 제공
-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서 전송하면 가입심사 관련 결과와 추천상품 정보를 제공받는 앱 운영

1. 보험산업 환경 변화
2. 국내 현황
3. 해외사례
4. 인터넷 채널 성장전망 분석
5. 법규상 비교
6. 쟁점 및 개선방안



채널 경쟁력 평가: 보험연구원 설문조사(2014)

인터넷채널, 높은 정보제공력, 반면 계약유지력 낮아

- 인터넷채널은 정보제공력과 비용경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에 계약유인력, 계약유지력에서는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음.
- 채널 중 전속대면만이 유일하게 계약유지능력에서 3점 이상을 받음.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고객 접근력	정보 제공력	계약 유인력	계약 유지력	비용 경제성	고객 접근력	정보 제공력	계약 유인력	계약 유지력	비용 경제성
전속대면	4.03	3.93	4.24	3.76	2.63	3.84	3.53	4.00	3.80	2.66
비전속대면	3.64	3.49	3.72	2.85	2.75	3.39	3.31	3.60	2.76	3.04
방카슈랑스	3.93	2.94	3.42	2.58	3.19	3.53	2.67	2.94	2.29	2.99
통신판매	3.09	2.72	2.84	2.34	3.24	3.23	2.86	2.91	2.47	3.39
홈쇼핑	3.61	2.93	3.12	2.07	2.87	3.73	3.23	3.40	2.21	3.00
마트슈랑스	3.36	2.49	2.60	2.13	2.90	3.31	2.47	2.47	2.24	2.90
인터넷	3.49	3.40	2.63	2.42	3.18	3.79	3.40	2.84	2.60	3.61

질문: 각 채널별로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낮음' 1점, '매우 높음' 5점으로 1~5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고객접근력, 정보제공력, 계약유인력, 계약유지능력, 비용경제성)

판매채널 환경변화 시 인터넷 채널 성장 가능성

- 향후 발생 가능한 판매채널 환경변화 시 전속대면채널 위축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인터넷채널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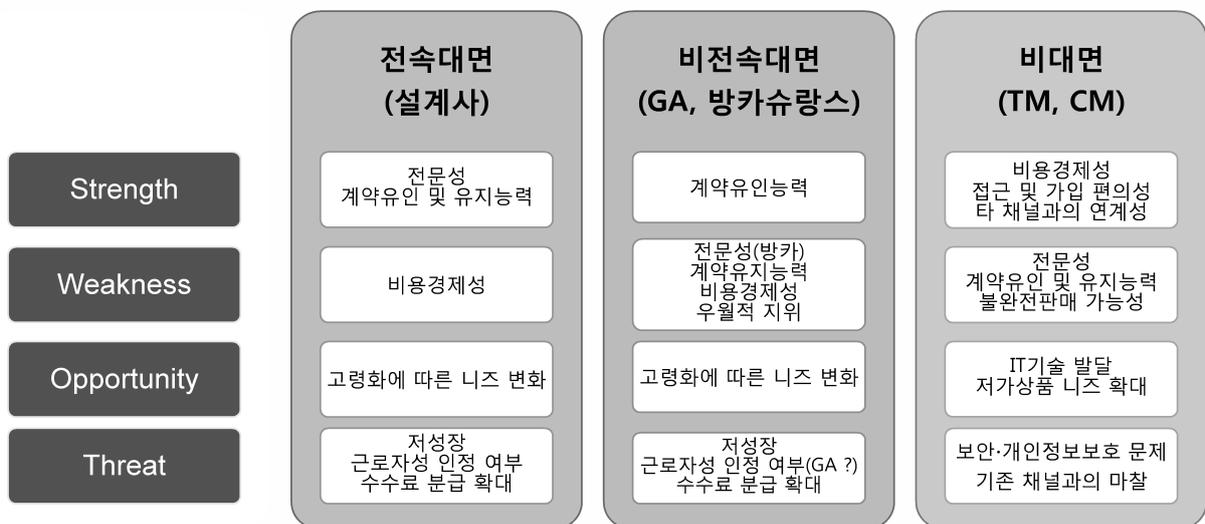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전체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전체
전속대면	2.71	2.50	2.41	2.54	2.38	2.56	1.82	2.36
비전속대면	3.14	3.46	3.14	3.25	3.26	3.12	2.00	3.01
방카슈랑스	3.38	3.25	2.77	3.13	2.44	2.60	1.82	2.40
통신판매	2.67	2.21	2.23	2.36	2.32	3.24	2.91	2.74
홈쇼핑	2.67	2.50	2.36	2.51	2.65	2.96	2.36	2.71
마트슈랑스	2.67	2.29	2.05	2.33	2.21	2.40	1.73	2.20
인터넷	3.76	3.58	3.41	3.58	3.44	3.76	3.00	3.49

질문: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수근로자고용직특별법, 인터넷 보험판매 등 보험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정부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에 대한 전망으로 귀사가 소속한 보험업계의 판매채널 구조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매우 낮음=1점, 매우 높음=5점)

채널별 SWOT 분석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2014)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채널전략을 달리 할 필요

- 비대면채널: IT기술 발달과 함께 저가상품 니즈 확대 예상, 반면 위험요소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으며, 기존 채널과의 마찰 등이 있음.
- 대면채널: 고령화에 따른 니즈 증가 예상, 반면 수수료 분급 확대와 설계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위험요소



IT기술 발달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음

- 비대면채널은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 발달로 성장 모멘텀이 크며, 대면채널 등 타 채널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 가능
- 또한, 저성장 환경에 저가상품 니즈가 커지는 만큼 성장 가능성 높음.
-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자발적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성장 한계 가능성 존재

멀티채널 전략에 적합한 채널

- IT기술 발달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타 채널과의 연계도 용이해 멀티채널 전략에 유리
- 예를 들면, 인터넷(탐색)과 설계사, 콜센터, 내방형 점포(구입)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채널
- 저비용채널로 저가상품에 적합하며, 젊은층과 저소득층을 타깃할 수 있음.

단순상품 개발 필요

- 인터넷채널은 비대면에 해당하므로 단순상품(예, 무진단 상품) 개발이 중요
- 이러한 무진단 상품의 경우 언더라이팅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임.

1. 보험산업 환경 변화

2. 국내 현황

3. 해외사례

4. 인터넷 채널 성장전망 분석

5. 법규상 비교

6. 쟁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통신판매 규제

- 진출입 규제는 2000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보험종목별 진입제도 도입 등에 따라 완화
- 온라인보험 판매의 경우 통신판매 규제를 준용
- 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모범기준에서도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 유도
- 2015년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추진

진출입 규제	통신판매 규제
(보험업법 제9조) 보험회사 사업개시 요건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이용 시 동 자본금 또는 기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업 개시가 가능함.	(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 보험종목만 취급시]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 종목별로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이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주요국 통신판매 규제 :중국

- 2011년 8월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활성화 계획 발표
- 2015년 8월 온라인 보험업무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해 온라인 보험업무에 관한 관리감독법을 발표함.

온라인 보험업무 관리감독법 주요내용

온라인 보험업의 주체 명시	일부 상품에 대해 타 지역 판매 허용
온라인 보험업 중 상품 판매, 배상청구, 민원처리 등 업무는 보험회사가 책임지며, 제3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체는 인터넷 관련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부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험업무는 할 수 없음.	보험업체는 개인상해보험, 정기생명보험, 일반형 종신보험, 보증보험, 온라인상으로 독립적 판매가 가능한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업체의 영업점이 없는 타 지역에서도 판매 가능하도록 하였음.
불량 보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과장된 상품 광고 금지
민원 발생률이 높은 보험업체에 대해 불량 보험상품의 영업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계 차원에서 불량업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공유하여 불량업체의 시장퇴출 제도를 강화함.	예상수익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광고를 금지하고, 예상수익률이 확정된 사안이라는 사실도 동등한 비중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음.

주요국 통신판매 규제 : 독일 및 일본

독일

보험계약법 6조 6항은 보험자의 조언 및 서면화 의무를 통신판매(Fernabsatz)의 경우 면제

일본

- 금융상품거래법 준용
- 특정시간대의 권유금지(금융상품거래법 38조 7호)
: 특정보험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에 관하여 개인고객에 대하여 폐를 끼치는 시간대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규칙 234조의27 1항 4호).

주요국 통신판매 규제 : 미국

연방차원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규칙(§ 64, Subpart L)
- Do-Not-Call 등록제도
 - 명부 등록 거주자(residential telephone subscriber)에게 아침 8시 전 또는 저녁 9시 이후의 전화판매권유 금지
 - 전화판매권유를 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 사업자의 이름, 고객이 연락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고지의무

뉴욕주

- 뉴욕주 일반영업법 399-z조 및 뉴욕주 규칙 21 CRR-NY 4603.1 ~ 4603.4
- 전국단위의 "do-not-call " 명부에 등록된 고객에게는 등록 후 31일이 지나면 요청되지 않은 전화판매를 할 수 없음(399-z조 5항, 21 CRR-NY 4603.1 (a)).
 - 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위반 행위별로 11,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99-z조 8항 (a), 21 CRR-NY 4603.4 (j)}.

주요국 통신판매 규제 : 영국(ICOBS)

비대면판매(Distance marketing) 공통 규제(ICOBS 3.1.1 R)

- **비대면판매 공시 규칙(The distance marketing disclosure rules)**
 - 인가업자는 비대면 계약의 체결 전 적시에, 비대면 판매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ICOBS 3.1.3 R).
- **소비자의 서면사본을 요구할 권리와 통신수단을 변경할 권리**
 - 소비자는 계약존속 중 언제든지 요청하면 계약조항이 담긴 서면을 받을 수 있고, 비대면 통신수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체결된 계약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ICOBS 3.1.1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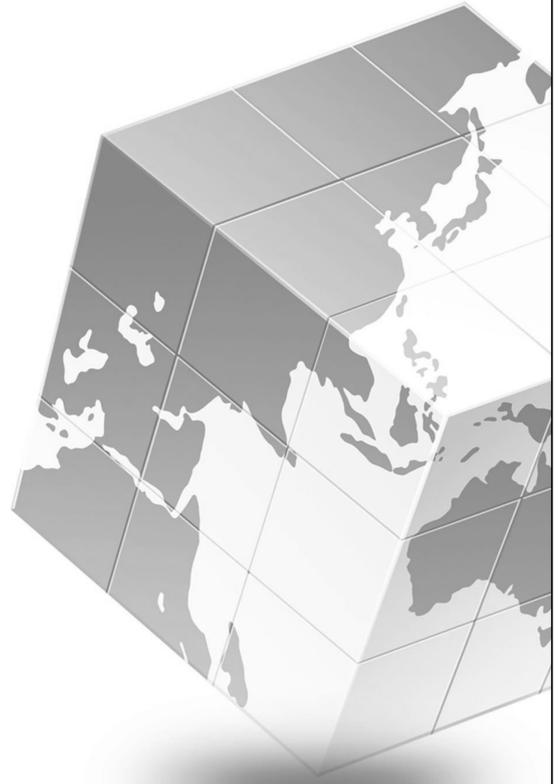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규제

- 영국에서 설립된 인가업자가 이메일로 요청되지 않은 상업적 통신을 하는 경우, 수령자가 이를 받자마자 요청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ICOBS 3.2.5 R).
- 인가업자는 전자상거래의 수령자에게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주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해야 한다(ICOBS 3.2.6 R).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다른 기술적 조치들
 - 인가업자가 체결된 계약을 파일에 보존하는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 주문 전 입력실수를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 계약체결을 위해 제공되는 언어들

규제상 개선점

-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는 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아웃바운드 영업인 TM 위주의 감독규제로 보완 필요
- 비대면 판매시 중요사항 정보제공의무 규제를 별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
 - 상품관련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독일, 영국, 호주 등은 비대면 판매시 일정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소비자의 서면사본을 요구할 권리, 통신수단을 변경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영국의 경우 비대면판매에 관하여 별도 규제를 뒤 공시해야 할 내용 및 예외, 소비자의 서면사본을 요구할 권리와 통신수단을 변경할 권리, 요청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금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공시해야 할 내용이 추가되는 등 추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 판매의 경우 조언 및 서면화 의무를 제외할 수 있을지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

1. 보험산업 환경 변화
2. 국내 현황
3. 해외사례
4. 인터넷 채널 성장전망 분석
5. 법규상 비교
6. 쟁점 및 개선방안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와 소비자 보호 이슈의 충돌

- **규제의 사각지대**
 - (문제점)
 - TM(전화판매) 중심의 통신판매 법적 규제 준용
 - 아웃바운드 중심의 TM과 인바운드 영업인 CM의 상이한 비즈니스 모델 반영 못함
 - (개선방안) 비대면판매 공통 적용규제와 전자상거래 추가 적용규제로 분리규율 필요
- **불완전판매 확대 우려**
 - (문제점)
 - 인터넷 판매의 경우 판매자에게 부여되는 설명의무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움
 - 상품구입에 따른 기본적인 책임은 소비자에게 부과될 가능성 높음
 - (개선방안)
 - 소비자가 약관 및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약관이해도 평가 및 심사강화
 - 계약유지율 등 완전판매 지표 관리 감독 강화
- **소비자의 자기책임 확대로 인한 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 발생 여지**
 - (문제점) 약관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시 책임소재
 - (개선방안)
 - 인터넷 판매 이후 발생하는 민원 처리 프로세스 확립
 - 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채널간의 충돌문제 해소와 수익성 확보가 관건

- 채널 Conflict
 - 부가보험료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 본격화
 - 인터넷채널을 자회사로 둔 보험회사의 경우 대면-비대면 채널간 갈등여지
- 역선택 심화
 - 보험청약 및 심사과정이 전반적으로 간소화되면서 역선택 심화
- 제한적 시장 수요로 인한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
 - 소비자들은 인터넷채널을 정보수집으로 활용하고 실제 청약은 대면채널 활용
 - 인터넷 채널 주 고객층은 20~30대, 가격변화에 민감한 소비자군에 한정

약관 이해도 제고와 민원 발생시 해결책 마련

- 금융상품 판매 후 완전판매모니터링 활성화
- 약관이나 중요사항 제공시 소비자 이해도 평가 반영
 - 소비자의 약관이해도 평가 수시 점검
 - 소비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보험용어, 예를 들어 의료보험의 경우 각종 의학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표준약관 변경
- 고객의향 확인 및 상품가입 동의 절차시 중요사항 확인 점검
 - 보험회사가 온라인 가입 고객들에게 가입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책 마련
 - 온라인보험 판매시 보험회사의 중요사항 정보제공 의무 강화

- 비대면 판매 공통 적용규제와 전자상거래 추가 적용규제로 분리규율 필요
- 판매단계에서 소비자이해 제고
 - 약관이해도 심사강화, 실질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공시 기준 개선
- 금융상품 판매후 모니터링 강화
 -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 강화
 - 불완전 판매율 관리감독 강화
 - 소비자 민원처리 프로세스 표준화
-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책 마련
 - 사업계획 심사시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부실화 가능성 점검
 - 온라인 보험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비용 발생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한 증자능력과 책임경영 의지 점검

Thank You!

제3세션

ICT시대의 핀테크 규제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금융규제의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효경 교수(충남대)

토론자 : 정 대 교수(한국해양대)/ 이효찬 실장(여신금융연구소)

사회자 : 강대섭 교수(부산대)

ICT시대의 핀테크 규제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금융규제의 동향을 중심으로-

이 효 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目 次]

- I. 서 론
- II. 핀테크를 둘러싼 일본의 법규제의 최근 동향
- III. 우리나라 핀테크 규제의 개선 방향 및 시사점
- IV. 맺음말

I. 서 론

핀테크(핀테크)라 함은 Finance와 Technoligy의 합성어이다. 광의로는 금융기술전반을 가리키며 금융과 IT(정보기술)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금융과 IT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용 결제나 자산관리, 자금조달 등 IT를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엔 인터넷전문은행¹⁾ 도입과 클라우드펀딩²⁾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이며 금융업계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³⁾ 기존 금융서비스가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핀테크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의 기술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진다.⁴⁾ 금융서

1)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 금융위원회가 2015년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동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서 ‘은산분리’완화 신중해야”, 아시아투데이(2015.9.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6.18)(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인터넷&r_url=&menu=7210100&no=30464)(2016. 2. 11.방문).

2) 클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라 함은 대중(Crowd)+자금조달(Funding)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클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보도자료(2016년 1월 19일)(http://www.fsc.go.kr/info/ntc_bref_view.jsp?menu=7210200&bbsid=BBS0029&no=31891)(2016. 2. 11.방문)

3) 다보스포럼이 올해 내세운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이다. 다보스가 주목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등이다. 매일경제(2016.1.19.)(<http://news.mk.co.kr/newsRead.php?no=49145&year=2016>)(2016. 2. 11.방문).

비스가 PC기반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새로운 모바일기기로 다양화되고, 고객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⁵⁾과 빅데이터(Big Data)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⁶⁾ 네트워크가 인터넷까지 확장되어 주변의 모든 사물과 연결해주는 사물인터넷이 핀테크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⁷⁾ 핀테크 영역은 결제·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해외 송금, 대출, 개인자산관리, 소액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⁸⁾ 최근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가 보편화되면서⁹⁾ 국내외의 지급결제서비스분야에서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¹⁰⁾ 페이팔(PayPal), 아마존(Amazon), 구글, 애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분야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뛰어난 IT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IT기업이 검색, 전자상거래 등 핵심사업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 및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¹¹⁾

<그림1>¹²⁾

해외 비금융기업의 주요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기업명	지급결제 대행	선불계정			모바일 지갑	모바일 POS	기타
		대금결제	P2P이체	실물카드			
페이팔	○	○	○	○	○	○	대출 중개
구글	○	○	○	○	○	×	
아마존	○	○	○	×	○	○	대출 중개
애플	○	○	×	×	○	×	
페이스북	○	○	×	×	×	×	
알리페이	○	○	○	×	○	×	대출 중개, 펀드판매

4) 남선욱,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로 살펴보는 핀테크”,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 60호(금융결제원, 2015), 32면.

5)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과 사물로부터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남선욱, 앞의 글, 33면.

6) 남선욱, 앞의 글, 32면.

7) “フィンテックって何?” エコノミスト2015.12.15., 24頁.

8) 조현아, “3대 핀테크 시장의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1호(금융결제원, 2015), 3면.

9) 최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채규항/손화자/조민경, “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지급결제 조사자료2016-1」(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2016), 2면.

10) 채규항/조민경/배문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5-2 (한국은행, 2015), 1면.

11) 김규수/이동규/이슬기,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4-6 (한국은행, 2014), 82면.

12) 김규수/이동규/이슬기, 앞의 글, 8면.

핀테크 시장은 전통 금융 강국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ICT가 발달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¹³⁾ 미국의 컨설팅전문기업인 액센추어(accenture)의 최신조사¹⁴⁾에 따르면 2014년의 금융 핀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세계에서 122억 달러로 2013년 40.5억 달러와 비교해 3배 증가하였다. 핀테크 투자는 계속적으로 미국이 규모가 가장 큰 반면, 2014년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럽으로 215% 늘어난 14억 8000만 달러가 되었다.¹⁵⁾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핀테크 기업 50개사 중 7개사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여 디지털 스타트업(start-up)¹⁶⁾ 기업의 중심지인 영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¹⁷⁾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Alibaba)가 투자한 온라인보험그룹인 중안(衆安)보험이 전 세계 핀테크 기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¹⁸⁾

또 액센추어에 따르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98억 8700만 달러)과 영국(6억 2300만 달러)에 비해 투자액이 5440만 달러에 머물고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다.¹⁹⁾ 우리나라의 핀테크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뒤처져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 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핀테크의 중심을 차지하는 모바일결제시장규모는 2015년에 전년 대비 45.5%증가의 약 5.7조 원에 이르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²⁰⁾ 또 핀테크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 수도 2015년 5월 시점에서 44개였지만, 그 해 11월에는 360개로 반 년 만에 8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이 2015년부터 핀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금융 규제 테두리의 재검토를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이 있다.²¹⁾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확대되고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전개되면서 금융에 관한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과제가 있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등의 보급에 의한 모바일지급서비스나 인터넷상의 개인 간 자금중개 비즈니스(P2P대출(Peer to peer lending))²²⁾등이 해외에서 급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지급결제서비스를 담당해 왔던 대형금융기관들이 큰 위기감을 갖고 있다.²³⁾ 핀테크 산업의 급성장으로

13) 해외 핀테크 기업 수는 2013년 현재 미국 374개, 영국 57개, 싱가포르 15개, 중국 10개, 홍콩 7개, 일본 4개이다. 「경제동향&이슈」 통권 제39호(국회예산정책처, 2016), 41면.

14)accenture最近調査(<https://www.accenture.com/jp-ja/company-news-releases-20150423>) (2016.2.13.방문).

15)accenture最近調査(<https://www.accenture.com/jp-ja/company-news-releases-20150423>) (2016.2.13.방문).

16) 창업 초기기업(start-up 기업)이라고 함.

17) “英國に迫る中國のフィンテック企業の勢い”日本經濟新聞2015年12月16日.

18) “마윈이 투자한 中 중안보험, 전세계 핀테크 기업 1위”이데일리2015년12월16일자.

19) “フィンテックって何?”エコノミスト2015.12.15., 23頁, 26頁.

20)“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 (2016.2.12.방문).

21)韓 國 で よ う や く 進 み 始 め た フ ィ ン テ ッ ク の 動 向 (http://www.dir.co.jp/consulting/asian_insight/20160128_010572.html) (2016.2.12.방문).

22) 미국 최대 P2P대출업체 렌딩클럽(Lending Club)은 2014년12월 뉴욕증권거래서(NYSE) 상장에 성공하며 8억 6,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금융동향센터, “전세계 핀테크 투자규모 급증과 은행의 대응방안”, 「주간브리프」 제24권 15호(한국금융연구원, 2015), 16면.

로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은행들의 대응이 아직 미약하다고 지적된다.²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IT기업에 대한 출자 등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²⁵⁾ 전략을 활용하고, 가상몰(Cyber Mall) 등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제공, 스마트 폰 등 모바일기기에 의한 지급결제비즈니스 등에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²⁶⁾

유럽, 미국과 비교해서 규제의 제약 등으로 전체적인 핀테크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일본의 경우 은행이 핀테크라는 신서비스를 광범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법에서 규정한 은행의 업무범위규제나 자회사규제 등의 완화 등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전통적인 금융업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범규제면에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²⁷⁾ 본고에서는 핀테크 시장을 둘러싼 일본의 법 규제에 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핀테크 규제에 관한 개선방향과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II. 핀테크를 둘러싼 일본의 범규제의 최근 동향

1. 금융청 금융심의회의 스터디그룹과 워킹그룹의 개요

일본 금융청은 금융과 IT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인 핀테크의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환경정비에 착수하였다.²⁸⁾ 은행이 전자상거래나 스마트폰 결제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17년 만에 은행규제를 완화하고, 최근 가상통화 「비트코인」 소동²⁹⁾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의 리스크로부터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감시대책을 처음으로 검토하였다.³⁰⁾ 2014년 10월 이후 금융청에 설치된 금융심의

23) 翁百合、"金融大変革、핀테크", 「NIRA」 No.15, (総合研究開発機構、2015), 4頁.

24) 금융동향센터, "전세계 핀테크 투자규모 급증과 은행의 대응방안", 17면.

25) 은행은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말한다. 금융동향센터, "전세계 핀테크 투자규모 급증과 은행의 대응방안", 17면.

26) 翁百合、앞의 글, 4면.

27)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핀테크 육성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2015.11.26., 8면 이하.

28)日本經濟新聞 2015年 9月 5日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C04H07_U5A900C1EE8000/)(2016.2.13. 방문).

29)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 Gox)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시스템을 조작해 현금과 비트코인 잔액을 부풀린 혐의로 본사 소재지인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일보 2015년 8월 2일
(<http://www.hankookilbo.com/v/d2fd858965bd43cf878cfbf50d34081a>)(2016.2.13. 방문).

30)日本經濟新聞 2015年 9月 5日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C04H07_U5A900C1EE8000/)(2016.2.13. 방문).

회³¹⁾의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스터디그룹」³²⁾에서 최근 IT의 발전과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개인·기업의 행동과 거래양식의 변화와 같은 결제분야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근거로 지급결제서비스의 편리성이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지급결제고도화에 관하여 심의하였다.³³⁾ 또 스터디그룹에서 논의 등을 통해 파악된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경영전략 문제와 밀접하고 불가분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 계기로, 2015년 3월 금융심의회 「금융그룹을 둘러싼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워킹그룹(이하 「금융그룹제도WG」라고 함)」³⁴⁾이 설치되어 금융그룹의 업무의 다양화·국제화의 진전 등의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금융그룹을 둘러싼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³⁵⁾

2015년 4월에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스터디그룹」에서 중간정리³⁶⁾를 공표하였고 결제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해서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 2015년 9월에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³⁷⁾으로 개조하였다. 2015년 12월 22일 금융심의회에서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보고서(案)³⁸⁾를 정리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으로 공표하였다. 아울러 동년 동일 「금융그룹제도WG」보고서³⁹⁾도 공표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산업성에서도 「핀테크연구회」⁴⁰⁾가 개최되어 신산업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⁴¹⁾

31) 수상(首相)의 자문기관이다.

32) 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スタディ・グループ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base_gijiroku.html#kessai_wg) (2016.2.13. 방문).

33) 保木健次, “金融ビジネスの基盤が変わる決済インフラと金融グループ制度の改革”, 「KPMG Insight」Vol.13, (あずさ監査法人 2015), 2頁.

34) 金融グループを巡る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base_gijiroku.html#financial_group) (2016.2.13. 방문).

35) 두 개의 그룹은 다른 배경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설치된 스터디그룹의 논의를 근거로 후자의 금융그룹제도WG가 설치된 배경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련의 논의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保木健次, 앞의 글, 2면.

36) 金融審議會 「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スタディ・グループ」中間整理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kessai_sg/siryou/20150422.html) (2016.2.13. 방문).

37) 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base_gijiroku.html#financial_group) (2016.2.13. 방문).

38) 「金融審議會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案)～決済高度化に向けた戦略的取組み～」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kessai_wg/siryou/20151217/01.pdf) (2016.2.13. 방문).

39) 金融審議會 「金融グループを巡る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の公表について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tosin/20151222-1.html) (2016.2.13. 방문).

40) 經濟産業省 「産業・金融・IT融合に関する研究會(핀테크研究會)」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economy.html>) (2016.2.13. 방문).

41) 일본의 금융관계자들은 금융처에서도 동일한 핀테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산업성에서 왜 연구회를 발족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다. “経産省がフィンテック研究會 本気の育成か、權益争いか”日本經濟新聞2015年10月7日付.

2. 금융그룹규제를 둘러싼 논의

2.1. 은행그룹규제의 현황

2.1.1.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정책(separation of commercial bank and securities)⁴²⁾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은행, 협동조직금융기관 그 밖의 정령(政令)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유가증권관련업⁴³⁾ 또는 투자운용업⁴⁴⁾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은행업과 증권업을 확연히 구별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銀証分離」라고 부른다.⁴⁶⁾ 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의 규정은 증권거래법 시대에는 증권거래법 제65조이며,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의한 증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유명한 규정이었다.⁴⁷⁾

은행에 의한 증권업에 대한 진입을 규제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⁴⁸⁾ 첫 번째는 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증권업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은행 예금자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증권거래법 제65조(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가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글래스 스티걸(Glass-Steagall Act)⁴⁹⁾을 계수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증권거래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총사령부의 지도하에 제정된 것이다. 특히 증권거

42) 은행과 상업의 분리는 시대에 의해 그 내용이 변천되어 왔으며, 원래는 은행과 증권업 등 다른 금융부문과의 분리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현재에는 비금융부문과 은행의 분리 문제로서 이해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금취급금융기관과 비금융회사와의 분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川濱昇, “米國における銀行の株式保有規制の変遷—銀行と商業の分離原則の行方—”, 「法學論叢」152卷5=6号(京都大學, 2003), 237頁. ; 우리나라는 미국의 예에 따라 엄격하게 금산분리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의 중점이 은행과 산업의 분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은산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은산분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자본 특히 재벌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최영주, “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검토”, 「동아법학」 제65호(동아대학교, 2014), 436면.

43) 금융상품거래법 제28조 제8항.

44) 금융상품거래법 제28조 제4항,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1의 9.

45) 川口恭弘, 「現代の金融機關と法[第5版]」(中央經濟社, 2016), 269頁.

46) 日野正晴, 「ベーシック金融法—規制と會計」(中央經濟社, 2015), 18면.

47) 川口恭弘, 앞의 책, 269면.

48) 이하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川口恭弘, 앞의 책, 269-279면.

49) 일본의 은행업과 증권업분리규정의 유래는 1929년 세계대공황의 경험에서 미국에 1933년 글래스 스티걸법이 제정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법에서는 은행은 투기로 이어지는 증권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980년대의 영국의 금융 빅뱅(Big Bang)을 계기로 하여 미국 은행은 런던시장에서 미국 국내의 증권업무를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미국의 은행업과 증권업분리는 유명무실화하여 1999년 11월 12일의 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의 성립으로 글래스 스티걸법이 폐지되어 은행업과 증권업분리가 대폭적으로 재검토되기에 이르렀다. 日野正晴, 앞의 책, 19면.

래법 제65조의 규정은 법안의 최종단계에서 총사령부의 강한 요구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두 번째는 견해는 증권업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증권업자가 증권업에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금자보호는 은행이 증권업으로부터 철회한 결과 나타난 이차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일본의 증권거래법 제65조와 미국의 글래스 스티걸법의 규정을 상세하게 비교한 경우 미국법에서는 은행에 의한 채권투자가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고,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 증권거래법 제65조에서는 채권 및 주식의 투자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다. 즉 은행의 리스크를 가져오는 증권투자에 관해서 전혀 제한이 없는 일본의 규정은 예금자보호를 제1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독점금지법⁵⁰⁾이 은행에 의한 주식보유를 그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독점금지법 제11조 제1항). 그러나 이것은 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주식보유에 의한 산업지배를 우려하여 규정한 것이다.

미국의 규정은 은행법으로서 규정되었고 일본의 규정은 증권거래법으로서 규정된 점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는 실제적으로 미국 규정을 따라 만든 것이지만 예금자보호이외에 증권규제의 관점에서의 입법취지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⁵¹⁾

2.1.2. 은행업무범위 규제

은행은 그 업무의 고도의 공익성 때문에 영업면허가 필요하며(은행법 제4조 제1항), 그 행하는 업무의 건전성이 특히 요구된다.⁵²⁾ 그런 점에서 은행은 타 업무에 대한 진입이 엄격하게 규제된다.⁵³⁾ 은행본체의 업무는 법정되어 고유업무(예금수취, 자금의 대출, 환거래 등)(은행법 제10조 제1항), 부수업무(은행법 제10조 제2항), 및 타업증권업(은행법 제11조)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무),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영위하는 업무(은행법 제12조)로 구성된다. 이러한 법정업무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영위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행할 수 없다(타업금지규제) (은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은행법 제10조 제2항 각 호는 은행업에 부수되는 기본적인 업무로서 일정한 부수 업무를 열거하고 있지만, 여기에 부가하여 은행은 「그 밖의 은행업에 부수되는 업무」 (은행법 제10조 제2항 본문)도 할 수 있다는 구성을 함으로써 부수 업무의 범위에 일정한 탄력성을 갖게 하고 있다.⁵⁴⁾⁵⁵⁾

50) 정식명칭은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이다.

51) 川口恭弘, 앞의 책, 272면.

52) 川口恭弘, “銀行の議決權保有規制”, 「金融法務事情」1975号(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3), 16頁

53) 川口恭弘, 앞의 글, 16면.

54) 「그 밖의 부수업무」의 범주에 있는지는 법 제12조에서 타 업무가 금지되고 있는 취지를 근거로 하면서 이하와 같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주요은행 등에 적합한 종합적인 감독지침(主要行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V - 3 - 2 「그 밖의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는 미국형의 규제를 채용하였지만 1992년 금융제도개혁법에 의해 은행·증권·신탁의 상호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은행과 증권회사에 대해서 업태별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입을 인정하고 은행 산하에 증권회사나 신탁은행을 둘 수 있게 되었다.⁵⁶⁾ 또 1997년의 독점금지법 등의 개정에 의해 지주회사가 해금되어 은행지주회사제도가 창설되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해금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활동하는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고 경영의 효율화나 경쟁 촉진이 기대되었다.⁵⁷⁾ 즉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증권회사의 자회사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동년 보험업법개정에 의해 보험지주회사제도가 창설되어 보험지주회사에 의한 증권회사 자회사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증권지주회사제도는 창설되지 않았으며,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은 자유화되었다.⁵⁸⁾

이와 같이 이업종이 은행업에 진입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면서 은행경영의 건전성확보 관점에서 2002년 개정은행법에서는 기존 은행의 상당정도의 주식을 취득하여 은행경영에 관여하려고 하는 주주를 「주요주주」로 하고 주식취득에 관하여 인가제로 하였다.⁵⁹⁾ 주요주주기준치는 은행의 총주주의 의결권20%이상의 보유자를 「은행주요주주」로 하고 규제대상으로 정하였다(은행법 제2조 제9항). 따라서 은행의 의결권의 2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가 필요하다.⁶⁰⁾

한편, 2008년 개정 은행법으로 은행지주회사산하의 회사에 대해 업무범위가 더욱

부수업무 등의 취급(その他の付隨業務等の取扱い)」에서는 ①해당업무가 은행법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 내세우는 업무에 준하는가? ②해당업무의 규모가 그 업무에 부수되는 고유업무의 규모에 비해서 과대한 것이 되지 않은가, ③해당업무에 대해서 은행업무와의 기능적인 친근성이나 리스크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④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정당하게 생긴 잉여능력의 활용에 기여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主要行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http://www.fsa.go.jp/common/law/guide/city/05.html#05_03) (2016.2.13.방문); 本間正人, 앞의 글 각주8), 9면.

55) 또한 금융청의 행정규칙의 사무가이드라인인 「中小・地域金融機関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중에서 III-4 銀行法等に係る事務處理 (III - 4 - 2 「その他の付隨業務」等の取扱い)이 참고가 된다 (<http://www.fsa.go.jp/common/law/guide/chusho/03b.html>) (2016.2.13.방문). 日野正晴, 앞의 책, 22頁.;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수업무의 범위는 반드시 고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수업무의 범위는 사회경제의 변화에 수반하여 은행에 대해서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개별 구체적, 또 유연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本間正人, "金融とテクノロジーの「フィンテック(핀테크)」國內法規制の最新動向", (<http://judiciary.asahi.com/fukabori/2015091700001.html>)(2016.2.13.방문), 9면.

56)北見良嗣、"米・英・EU・獨仏の銀行規制・構造改革法について"、「金融廳金融研究センター 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金融廳, 2014), 53頁.

57) 이효경, "일본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법적과제", 「경제법연구」 제13권1호(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126면.

58)北見良嗣、앞의 글, 53면.

59) 金融廳事務局説明資料 (金融グループを巡る制度の変遷等) (2015年5月19日), 10頁.

60) 川口恭弘, 앞의 책, 23면.

확대되었다. 은행법상 의결권보유제한으로서 은행의 타업금지의 취지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 또는 그 자회사는 국내 회사의 의결권에 대하여 합산하여 그 회사의 총주주 등의 의결권의 5%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5%룰이 있고(은행법 제16조의 3 제1항), 또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할 수 없는 회사(일반사업회사)의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합산하여 그 발행주식총수 등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얻은 주식 등의 수 또는 액수를 넘는 수 또는 액수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소유할 수 없는 합산15%룰(은행법 제52조의 24)이 규정되어 있다.⁶¹⁾ 그 결과 은행지주회사그룹 전체에서 15%밖에는 인정되지 않는 일반사업회사의 의결권보유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도입하였다. 다만 일반사업회사와의 구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세한 요건을 두었다.⁶²⁾ 즉 자회사의 업무범위는 은행본체가 타업 금지를 하고 있는 취지를 근거로 해서 규정하며, 은행의 업무범위를 자회사를 통해서 일반사업회사의 분야에 대해서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⁶³⁾

자회사의 업무범위, 즉 지주회사가 어떠한 자회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괄해서 말하자면, ①상호진입이 인정되는 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②그것에 종속하는 업무 중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종속업무, 금융상품거래법시행규칙 제34조의 16,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 2)나 금융관련 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 ③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회사 또는 경영향상에 상당정도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사업 활동을 행하는 회사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회사(이른바, 벤처비즈니스 기업을 상정할 수 있음), ④이러한 회사만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대별된다(은행법 제52조의 23 제1항, 보험업법 제271조의 22 제1항).⁶⁴⁾

61) 여기에 대해서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합산15%룰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와의 큰 차이는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서 가지는 것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있다. 즉 전자는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서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은행법 제52조의 23 제1항 본문), 또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는 일반사업회사에 대한 주식을 합산하여 15%를 넘어서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식보유제한이 부과된다(은행법 제52조의 24 제1항). 여기에 대해서 후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사업회사도 자회사로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271조의 22 제1항). 은행에 다른 업의 금지가 부과되고 있는 취지나 은행의 공공적인 성격에 의한 안전망의 존재를 고려하면 은행지주회사가 일반사업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반드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川口恭弘, 앞의 책, 295면.; 이효경, 앞의 글, 129~130면.

62) 金融廳事務局說明資料, 15頁.

63)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다른 은행, 금융상품거래업자, 보험회사, 종속 업무를 경영하는 회사, 금융관련 업무를 경영하는 회사 등 금융관련 분야의 회사를 중심으로 하고 자회사를 가지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 2, 제52조의 23). 한편, 은행의 해외에 있어서의 자회사 등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국내의 자회사등과 같은 업무범위의 사고방식이 적용된다. (주요은행 등에 적합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 V-3-3-3 은행의 해외에 있어서의 자회사 등의 업무 범위). 本間正人, 앞의 글, 3면.

64) 近藤光男·吉原和志·黒沼悦郎, 「金融商品取引法入門」(商事法務, 2009), 425頁.; 이효경, 앞의 글 129면.

2.1.3. 은행의 업무범위확대에 관한 논의

최근 일본 금융청에서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즉 은행규제를 17년 만에 전환하여 지주회사 산하에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또 스마트폰결제나 소액결제, 가상통화거래에서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한 그물망을 마련하고 있다.⁶⁵⁾ 인터넷을 활용한 결제나 자금조달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업의 기둥이 되는 주체는 라쿠텐(樂天)이나 야후와 같은 IT기업이며, 1990년대의 규제 완화로 타업종이 금융에 참여하기 쉬워진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⁶⁶⁾ 그러나 은행의 산업지배에 연결되는 타업종에 대한 참여는 여전히 엄격해서 아마존 재팬이 자신의 가상쇼핑몰에 출점하는 기업에 용자를 할 수는 있어도⁶⁷⁾ 은행이 고객을 모아서 가상몰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⁶⁸⁾ 미국의 시티그룹이나 미국의 JP모건 체이스는 벤처기업을 매수하여 금융과 밀접한 IT비즈니스를 산하에 두고 있다. 일본의 은행이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과잉 규제를 받는 이상 국제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⁶⁹⁾ 규제가 완화되면 일본의 은행도 IT기업에 출자하고, 라쿠텐등과 같이 전자몰을 운영할 수 있다. 은행이 몰 이용자나 분점 기업의 빅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면 젊은 층 등 종래와 다른 폭넓은 고객층에 금융상품·서비스를 제안할 가능성도 열린다.⁷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은행 업무범위는 그동안 점점 확대해 왔다. 하지만 주요국의 은행규제개혁 움직임들을 보면 리먼사태의 반성으로부터 현재 글로벌 규제와 감독제도개혁을 도모하고 있다.⁷¹⁾ 최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과 미국에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폭넓은 금융규제와 제도개혁을 규정한 미국의 도드-프랭크(Dodd-Frank)법에서는 은행업의 본래의 「예금=대출」의 업무 중심의 모습으로 돌리려고 하는 볼커룰(Volker Rule)⁷²⁾이라는 업무범위규제가 도입

65) 「「フィンテック」環境整備へ 金融廳、銀行規制17年ぶり緩和」, 日本經濟新聞2015年9月5日(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C04H07_U5A900C1EE8000/) (2016.2.13.방문).

66) 「金融・IT融合に危機感 銀行規制轉換」, 日本經濟新聞2015年2月25日(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C24H1Q_U5A220C1MM8000/) (2016.2.13.방문).

67) 일본 대형 통신판매기업인 아마존재팬은 2014년 2월 20일부터 법인의 판매사업자에게 새로운 대출 서비스“아마존렌딩(Amazon Lending)” 제공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한 법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판매사업자의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쉽게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재팬(<http://www.amazon.co.jp/gp/press/pr/20140220>)(2016.2.3.방문).

68) 「金融・IT融合に危機感 銀行規制轉換 國際競争を後押し」, 日本經濟新聞2015年2月25日(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C24H1Q_U5A220C1MM8000/)(2016.2.13.방문).

69) 「金融・IT融合に危機感 銀行規制轉換 國際競争を後押し」, 日本經濟新聞2015年2月25日(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C24H1Q_U5A220C1MM8000/)(2016.2.13.방문).

70) 「「フィンテック」環境整備へ 金融廳、銀行規制17年ぶり緩和」, 日本經濟新聞2015年9月5日(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C04H07_U5A900C1EE8000/)(2016.2.13.방문).

71) 이효경, “국제적인 금융규제의 최근동향과 시사점-은행법의 제 문제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5집 제3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58면.

72) 미국은 2010년 7월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Dodd-Frank)법)을 통해 “볼커룰(Volker Rule)”을 도입하였다. 볼커룰은 예금취급기관 및 그 지배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투자업무(proprietary trading)를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금융기관, 금융시장에서 규제완화를 진척시켜왔지만, 리먼사태를 계기로 규제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마블사”(Too-big-to-fail ; TBTF)의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에 빠진 경우의 구제에 공적자금이 사용된 것에 대한 반발이 강하고 이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업무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⁷³⁾ 이와 같이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고, 금융그룹을 둘러싼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건전성 등을 모국당국이 책임을 가지고 감독해 가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지주회사규제를 도입한 이후 15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에 은행업무나 은행에 기대하는 역할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그룹의 비즈니스에 큰 변혁을 가져올 논의가 최근 금융청 금융심의회의 「금융그룹제도 WG」에서 보고서로 공표되었다.⁷⁴⁾ 앞서 살펴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범위는 기본적으로는 한정 열거의 방식이어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에 참여에는 제약이 따른다.⁷⁵⁾ 매수와 출자에 의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형태를 전개하려고 하여도 해당 매수와 출자의 대상이 되는 핀테크 기업의 업무 중에 한정 열거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매수와 출자가 불가능하게 된다.⁷⁶⁾ 매수와 출자 대상이 되고 있는 핀테크 벤처의 업무범위의 전체가 은행법이 정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일본 국내의 경우,⁷⁷⁾ 결국은 5%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5%)의 취지를 상한으로 한 관여만 허용되기 때문에 현행의 법제도는 매수와 출자를 통한 핀테크 영역에 대한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다.⁷⁸⁾

2.2. 금융그룹제도의 개혁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1997년의 독점금지법등의 개정예 의해 지주회사가 해금되어 은행지주회사제도가 창설되었다. 이 제도정비에 있어서는 미국의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제도를 참고하였다.⁷⁹⁾ 2015년 5월부터 논의

원칙적으로 금지(시장조성 목적의 경우는 제외)하고 헤지펀드·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는 은행 기본자본(Tier 1)의 3% 이내 또는 펀드지분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석, “최근 주요국의 은행구조개혁 관련 논의와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2권 38호, 2013, 4-5면.; 이효경, 앞의 글, 52면.

73) 川口恭弘, 앞의 책, 272면.

74) 金融廳事務局説明資料, 17頁.

75) 本間正人, 앞의 글, 4면.

76) 本間正人, 앞의 글, 4면.

77) 국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5% (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15%)의 의결권보유 제한의 적용은 없지만, 자회사·관련 법인 등에 관계되는 업무범위규제가 적용되므로 결국 지배력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출자는 어렵게 된다. 本間正人, 앞의 글 각주13), 10면.

78) 외국의 회사를 매수할 경우에는 자회사업무범위규제에 대해서 5년간은 예외를 인정받는다(은행법 제16조의 2 제4항, 제52조의 23 제3항). 本間正人, 앞의 글 각주14), 10면.

79) 松尾直彦, “アメリカの銀行持株會社法制とFHCの業務範圍”, 「金融財政事情」第66卷24号

가 시작된 금융심의회 의 금융그룹제도WG에 있어서도 은행그룹의 업무범위의 재검토에서 BHC법⁸⁰⁾에 근거한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FHC")제도를 참고하고 있다.⁸¹⁾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중에는 떠오르는 핀테크 벤처기업의 출자나 제휴관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⁸²⁾ 일본에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업무규제 등에서 기업의 출자가 기동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⁸³⁾ 또 메가뱅크 그룹에서는 은행 이외의 업태의 자회사나 해외자회사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익의 비율이 증가 경향에 있는 한편, 지역금융기관 사이는 지주회사를 활용한 현(縣)영역의 틀을 초월한 은행 간 경영통합이 진행되는 등 금융 그룹의 경영 전략 면에서의 새로운 전개가 보인다.⁸⁴⁾ 또 지주회사에 의해 그룹 전체의 경영관리나 리스크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는 은행그룹에게는 통상적인 경우보다도 유연한 업무전개를 인정하는 것이다.⁸⁵⁾ 이를 통해 은행업무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T벤처를 은행그룹 산하에 둬으로써 자금이자의 저하로 장래 수익에 불안을 안고 있는 일본 은행들의 비즈니스에서도 새로운 전략적 전개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⁸⁶⁾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그룹제도WG에서는 금융그룹의 경영관리방식과 금융 그룹으로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법 개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정리하였다.⁸⁷⁾

(金融財政事情研究會、2015), 18頁.; FHC는 본원적 금융업무 및 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더해 규제 당국의 개별의 인가에 근거하고 금융업무를 보완하는 업무(일본의 제도와 달리 한정 열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를 하도록 인정하고 있고, 인가심사에 있어서는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의 영향·정도, 리스크 차단 조치 등이 고려되고 있다. 本間正人、앞의 글, 5면.

80) 1956년에 BHC법이 제정되었다. 은행그룹의 업무범위는 은행업무 및 은행업무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로 한정되는 등 그 후에도 금산분리를 지키게 되었다. 미국의 BHC법에 대해서는 서완석, “미국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법제의 현황”, 「기업법연구」 제24권 제1호(한국기업법학회, 2010), 110면.

81) 松尾直彦, 앞의 글, 18면.

82) 미국의 컨설팅기업인 액센추어에 따르면 금융분야의 기술투자는 글로벌베이스로 2008년의 9억3,000달러에서 2013년에 29억7,000달러로 3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최근 많은 투자가 벤처기업으로 가고 있다. “The Boom in Global Fin Tech Investment” Accenture2014.; 柴田誠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とベンチャー活用がカギ 金融財政事情」 第66卷5号(金融財政事情研究會、2015), 10頁

83) 大崎貞和, “動き出す金融グループ規制”(野村総合研究所, 2016) (<http://fis.nri.co.jp/ja-JP/knowledge/commentary/2016/20160105.html>)(2016.2.13.방문).

84) 大崎貞和, 앞의 글, 1면.; 金融審議會 「金融グループを巡る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の公表について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tosin/20151222-1.html) (2016.2.13.방문).

85) 中島淳一, “ワーキング・グループの論点と制度改革の方向性 : 持株会社による適切な経営管理を促し、柔軟な業務展開を可能に (特集 金融グループ制度改革の論点)” 金融財政事情」 第66卷24号(金融財政事情研究會、2015), 10頁.

86) 中島淳一, 앞의 글, 10면.

2.2.1. 금융그룹에서 경영관리의 바람직한 모습

금융그룹의 경영관리방식은 메가뱅크그룹이나 지역은행그룹의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금융그룹의 경영관리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경영관리의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단일모델 같은 것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영업기반·규모·리스크 특성·경영전략 등에 따라 개별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 다음, 어떻게 실효성을 갖는 경영관리체제구축을 시도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어떤 경영관리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각 그룹과 감독 당국과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은행 법령 등의 규제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틀을 정하고, 각 금융그룹의 실상을 감안한 경영관리체제의 선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하고 있다.

즉, 은행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금융그룹에서 다양한 조직형태가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서 그러한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령에 의한 회사법상의 기관설계나 임직원의 겸직과 같은 조직형태 등 경영관리의 형태에 대해서 특정 규칙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지주회사와 지주회사가 없는 경우의 그룹의 정점의 은행이 완수해야 할 금융 관리 기능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령으로 마련하는 것과 금융그룹 전체의 실효적인 경영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집약·공유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것 등을 제언하고 있다.

2.2.2. 금융그룹의 공동·중복업무의 집약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의 각 운영 주체에서 공동·중복되는 업무를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집약하는 것으로 그룹의 시너지 효과의 발휘와 비용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면의 재검토를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행법상 ‘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실시하는 것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은행지주회사의 업무범위규제(은행법 제52조의 21)를 재검토, ‘지주회사가 통괄적·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일체적·효율적인 경영관리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주회사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보고서가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지주 회사의 이사회 등에 “사외의 시점”를 도입하는 등의 궁리도 하면서 그룹전체에 대한 실효적 감독기능발휘가 확보된다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보고서는 금융그룹의 경영관리체제에 대하여 특정 형태를 일률적으로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하고 있으나

87) 大崎貞和, 앞의 글, 1면 이하를 인용.

이 부분의 기술에는 독립성이 높은 사외이사가 복수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주회사로 그룹경영관리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금융 그룹 내의 각 운영주체에서 공통·중복되는 업무를 집약하는 방법으로는 지주회사로 집약하는 것 이외에, 그룹 내의 특정의 자회사에 집약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그룹 내의 여러 은행에서 특정의 자회사에 집약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의 관리의무를 각 위탁원은행이 아닌 지주회사가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금융그룹 내에서 자금잉여상태에 있는 주체에서 자금부족의주체에 대한 사내 이율을 활용한 자금 융통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칙 아래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유연하게 인정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형제회사나 자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진행거래조건을 우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에 붙이는 일을 금지하는 이른바 공정한 거래조건(Arms Length Rule)(은행법 제13조의 2)의 예외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2.2.3. 금융그룹의 IT 및 결제관련업무의 취급

기업의 출자나 은행그룹 안팎의 결제관련사무 등의 수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제언되고 있다. 즉 은행이나 금융그룹의 핀테크 기업과 주로 미국의 금융그룹이 이미 전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장의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금융관련업무(은행 업무 등에 부수 또는 관련 업무)과 종속업무(은행 또는 은행 그룹에 속하는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에 종속하는 업무)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은행지주 회사와 은행이 인가 받아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업무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위한 자회사 등의 출자를 할 것을 허용하도록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가에 있어서는 은행이나 금융그룹에 의한 타업금지의 취지 등을 근거로, 예컨대 ① 그룹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 ② 은행업무의 리스크와의 친밀성이 있을 것, 그 밖의 은행 본체에 대한 리스크파급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 ③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이익상충에 의한 폐해의 우려가 없는 것, ④ 해당 출자가 그룹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확대 또는 그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등을 감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개별의 인가를 받을 경우의 구체적인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자회사와 계열회사로 리스크 차단이 유효성이 다르다는 것 등을 감안하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와 은행의 보유로 출자처 기업의 업무 내용·리스크 등에 따라 출자비율의 상한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것은 현행 법률상 은행의 사업회사의 주식보유가 총 주주 의결권의 5%이하로 제한하는데(은행법 제16조의 3 제1항),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그 자회사와 합산에서 15%이하로 한다(은행법 52조의 24 제1항)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은행지주 회사 형태를 취하는 금융그룹의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출자비율이 지주회사 산하에는 없는 은행의 직접 출자의 경우에 비해서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큰 비율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고서는 출자비율의 상한에 차이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은 ‘출자처 기업의 업무내용·리스크 등에 응하고’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은행의 자회사 및 계열 회사인 결제 관련 시스템 업무 등의 중속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 모 은행그룹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것을 요구하는 수입의존도규제가 설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내용이 성사되면 금융그룹의 전략적 IT투자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워킹 그룹 보고서의 제언 내용에 근거한 법령 개정은 연초에 소집된 정기 국회에서 심의되어 2017년도에 새로운 금융그룹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제업무 고도화에 관한 검토

3.1.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⁸⁸⁾

2015년 12월에 금융청의 금융심의회에서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案)이 공표되었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많은 논점의 주제들이 있지만 법체계와 현행제도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⁸⁹⁾

3.1.1. 결제 업무 등을 둘러싼 현행 법 체계

현행, 결제업무 등을 둘러싼 법체계로서 “환거래”, “예금의 수신과 대출”을 고유업무로 하는 은행에 대해서 은행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그 은행의 고유업무의 일부 또는 그것에 인접하는 업무를 할 경우에 대해서 각종 업무 때마다 은행법에 비해서 완만한 규제 하에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정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결제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동업으로서 지금까지 은행만 인정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 소액의 서비스만 할 수 있다. 자금이동업은 예금의 수신을 하지 않는 등 기존 은행의 고유업무의 일부를 행하는데 불과했고 이 같은 사업 내용 등을 토대로 등록제로 하면서 송금 도중에 있는 자금과 동액의 자산의 보전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대체하고 있다. 선불식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종이형(紙型), IC형에 서버형으로 발행이 행해지고 있다. 이 때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이나 외환거래 해당성 등의 관점에서 선지불식지불수단의 보유

88) 「金融審議會決濟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案)～決濟高度化に向けた戦略的取組み～」決濟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kessai_wg/siryou/20151217/01.pdf) (2016.2.3.방문).

89) 이하의 내용은 「金融審議會決濟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案)～決濟高度化に向けた戦略的取組み～」決濟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그룹(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kessai_wg/siryou/20151217/01.pdf) (2016.2.3.방문).

자에 대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한편, 그 양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자가형 발행자는 신고제, 제3자형 발행자는 등록제 하에 미사용잔액의 2분의 1이상의 보전의무 등 은행보다 완만한 규제로 되어 있다. 대출업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는 대출을 업으로서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업무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자금 수요자 등의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등록제 하에 각종의 행위규제(과잉대출금지, 서면교부의무 등)가 마련되어 있다.

3.1.2. 기본적인 과제

이러한 각 업무마다의 규제의 틀은 반드시 서로 정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IT의 진화에 의해 자금이동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버형의 대규모인 선불카드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유사성 보이지만, 고객으로부터 책임진 자산의 보전에 대해서 자금이동업은 그 전액을 공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을 뿐, 선불식지급수단의 발행자에 대해서는 발행된 선불식지급수단의 미사용 잔고에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있는 등 규제에 차이가 있다.

금융·IT융합의 동향을 배경으로 규제 영역에 걸쳐있는 형태로 결제서비스가 발달하는 동시에 다른 규제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결제수단이 일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결제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용자 편의의 방해가 되거나 비즈니스 선택의 왜곡을 초래해 갈 가능성도 있다. 각종 결제서비스의 기능 진화가 진행되고, 결제서비스와 융자 업무를 조합하는 등에 의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도 출현하고 있다. 또 선불식지급수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의 규모 확대가 진행할 경우, 결제 네트워크 전체가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각 업 법마다의 법체계는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을 충분히 시야에 넣고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또 은행과 이용자의 사이에서 양자를 개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적 업자(PISP :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⁹⁰⁾」가 출현하고 있다. 이 업무에 관해서는 종래 은행을 위해서 예금 등의 수신·융자·환거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대리업 제도 하에 허가제 등을 통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예를 들면, ATM의 제공은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에는 해당하지 않고 중요한 업무이여도 규제의 직접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가 이루어진다. 또 해외의 사례 등을 보면 은행에서 위탁 등을 받지 않고 고객과 「중간적 업자」라는 계약에 근거하여 은행계좌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실행하는 형태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

90) EU의 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이하, 「PSD」라 함)개정안(PSD2)에서의 중간적 업체(PISP)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제서비스이용자의 의뢰로 다른 결제서비스제공자에 개설된 결제계좌에 대한 지급 지시를 발동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SD2 제4조 제32항).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에서 상인의 웹 사이트와 이용자의 은행의 온라인시스템을 잇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은행계좌이체에 의한 결제를 하는 서비스 등이 상정되고 있다(PSD2 전문). EU決済サービス指令等の概要(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kessai_wg/siryoku/20150915/02.pdf) (2016.2.3.방문).

는 고객보호 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중간적 업자」의 등장으로 은행대리업제도가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로 대응하는 종래의 규제 체계는 충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PSD를 살펴보면, 지급결제분야의 정세변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PSD를 책정하여 은행·선불카드(전자머니)업자·결제서비스사업자를 통한 자본요건이나 정보제공의무 등 횡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⁹¹⁾

3.1.3. 결제를 둘러싸는 앞으로의 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각국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의 결제 분야에서의 정세변화와 이에 수반한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결제를 둘러싼 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예를 들면, 이하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금융·IT융합의 진전 등에 수반하여 결제업무를 비롯한 각종의 금융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또 이용자에 있어서도 각종의 결제수단을 일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제 비즈니스의 선택에 왜곡이 생기거나 이용자 편리에 방해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유연하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횡단적인 규제 체계의 구축이 장래 목표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횡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때에 결제서비스의 과정에 있어서 「중간적 업자」 등이 이용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결제서비스의 국제적인 진출이 가속화되고 사업자가 해외진출을 지향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제도 면에서도 앞을 내다보면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금융서비스가 국제적인 발전과 이용자 편리성과 안전성의 양쪽에서 중요하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법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혁신의 진전을

91) PSD개정안 (PSD2) 에서 PISP의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PISP는 결제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됨으로써 결제서비스제공자에 관한 규정(면허제, 자기 자본 규제 등)을 적용한다. 그 밖에 PISP에 관련하여 이하의 규제 등을 도입(PISP에 대한 규제)하고 있다.

- 지급인에서 자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또한 PISP는 재산보전의무의 대상 외. 한편, 무권한거래에 관련된 책임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
- 서비스에서 얻은 이용자정보관리 등 의무화
- 지급인이나 결제계좌를 관리하는 결제서비스제공자 등 지급지시의 발동에 관한 정보제공의무화
- 무권한거래·불이행 시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정비(결제계좌를 관리하는 결제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의무 등)
- (결제계좌를 관리하는 결제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지급인이 동의했을 경우 결제계좌를 관리하는 결제서비스제공자가 PISP에 대한 결제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E U 決 濟 サ ー ビ ス 指 令 等 の 概 要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kessai_wg/siryoku/20150915/02.pdf) (2016.2.3.방문).

저해하지 않도록 리스크에 따른 규제 관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2. 앞으로의 과제

일본은 2014년 10월부터 결제고도화 스터디그룹⁹²⁾을 발족한 이래로, 종래부터 금융인프라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벤처기업에서의 시행착오를 제도로 실시한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2015년 결제고도화 워킹그룹의 보고서(案)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은행에 의한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⁹³⁾ 즉 은행의 신규 업무에 관한 개별인가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은행법은 금융그룹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령에 한정 열거되고 있다. 또 은행은 5%, 은행지주회사는 15%까지 출자규제가 있다. 법 개정으로 금융청의 인가를 받으면 열거되지 않은 업무를 출자제한을 넘어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규업무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업무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업무"조건에서, 금융청은 구체적인 출자자로 IT벤처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상장기업의 출자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경우는 인가의 대상 외로 하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송금서비스,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중간적 업자에 대한 제도 정비, 캐시아웃서비스, 비트코인에 있어서 자금세탁규제와 이용자보호 등이 논의되었다. 금융청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2016년 3월 초순까지 은행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IT기술의 혁신이 사업환경에 따라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여 인프라가 되는 지급결제분야에서는 소비자 및 사업자 양쪽으로부터 편리성이 높고 신속하며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⁹⁴⁾

일본에서는 지급결제분야에서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시장정보의 불완전함이 있었다.⁹⁵⁾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으로 크게 상황이 변화하면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장정보의 불완전함이 극복되고, 그 결과 진입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면서 기득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고 있다.⁹⁶⁾ 또 이러한

92)金融審議會「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スタディ・グループ」中間整理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tosin/20150428-1.html) (2016.2.3.방문).

93) 보고서의 큰 기둥 중 1개는 은행의 신규 업무에 관한 개별인가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은행법은 금융그룹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령에 한정 열거되고 있다. 또 은행은 5%, 은행지주회사는 15%까지 출자규제가 있다. 법 개정으로 금융청의 인가를 받으면 열거되지 않은 업무를 출자제한을 넘어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규업무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업무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업무"조건에서, 금융청은 구체적인 출자자로 IT벤처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상장기업의 출자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경우는 인가의 대상 외로 하고 있다.

94)堀 天子, "資金移動サービスに関するEU・ニューヨーク州・シンガポールの法制度比較 : 國際的觀點からみた資金移動業者の規制のあり方に關する考察 (特集 決済高度化ワーキング・グループの論点)", 「金融財政事情」 제66권 34호(2015.9.7.), 25면.

95)野口悠紀雄, 野口悠紀雄, "フィンテックなどで新サービス、日本は消費者志向の規制緩和を", 「エコノミスト」(2015. 12. 22), 39頁.

규제가 새로운 기술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⁹⁷⁾ 일본 정부도 서서히 규제를 완화하여 사회구조를 재검토해 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⁹⁸⁾

금융청 보고서에서 개인결제서비스제도에 대해서는 캐시아웃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⁹⁹⁾ 결제의 주변 서비스가 점점 다양화하고 고도화되고 있고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 상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한 편리성 높은 기능이 요구된다.¹⁰⁰⁾ 따라서 보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법인, 개인 모두 인터넷뱅킹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¹⁰¹⁾ 이것을 방지함에 있어서 은행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용자 측의 리터러시(literacy)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과제로 삼고 있다.¹⁰²⁾

III. 우리나라 핀테크 규제의 개선 방향 및 시사점

1. 핀테크의 금융규제 체계

핀테크는 금융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핀테크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상세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도 실현해야 할 결과를 원칙중심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¹⁰³⁾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해외선진국의 규제체계는 대부분 원칙중심체계이다.¹⁰⁴⁾ 과잉규제를 피하는 한편 지켜야할 것은 지키고 리스크에 따른 규제나 책임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서는 규제형성에 관여하는 자와 기술이나 비즈니스의 발전에 관여하는 자가 종래이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¹⁰⁵⁾

현행 일본의 지급결제업무 등을 둘러싼 법체계에서 환거래나 예금 수취와 대출을 고유업무로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은행의 고유업무의 일부 또는 그에 접근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종 업무마다 은행법에 비해 완화된 규제 하에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는 외국 입법례들은 최근 비금융회사들의 지급서비스업 진출에 따라 규제 형태와 수준을 많이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¹⁰⁶⁾ 소규모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존 법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규제수준은 완화하되 사업 규모의 성장 정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96) 野口悠紀雄, 앞의 글, 39頁.

97) 野口悠紀雄, 앞의 글, 39頁.

98) 野口悠紀雄, 앞의 글, 39頁.

99)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技術革新がもたらす決済サービスの変貌”, 「金融財政事情」2015.9.21., 27頁.

100)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앞의 자료, 27면.

101)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앞의 자료, 27면.

102)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앞의 자료, 27면.

103) 森下哲朗, “金融大変革, 핀테크”, 「NIRA」 No.15, (総合研究開発機構, 2015), 5頁.

104) 김자봉, “핀테크와 금융규제혁신의 바람직한 방향”, 「주간브리프」 제24권 17호(한국금융연구원, 2015), 13면.

105) 森下哲朗, 앞의 글, 5면.

106) 김시홍,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12), 64면.

요건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¹⁰⁷⁾

또 우리나라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 등 비금융기업들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다.¹⁰⁸⁾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진입 요건은 더욱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규모증가에 따라 책임이 강화되는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규제에 있어서도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¹⁰⁹⁾ 일본의 자금결제법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업종이나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정의나 업종을 설계할 때 포괄적이고 큰 카테고리별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포괄주의 규제방식으로 전자금융업종 구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¹¹⁰⁾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출현하는 경우 결제서비스의 선택을 해치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칸막이식 업종 규율을 지양하고 업종을 포괄적으로 축소 개편하고, 일본과 같이 업무횡단적인 규제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¹¹¹⁾

2. 은산분리 완화 문제

국내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면서 수익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고, 경영성과의 조속한 회복가능성도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²⁾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¹¹³⁾ 원칙에 대한 타당

107) 채규항·조민경·배문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지급결제 조사자료2015-2」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한국은행, 2015), 24면.

108) 김규수·이동규·이슬기,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2014-6」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한국은행, 2014), 100면.;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전자지급수단과 해당 업종 설계에 대하여 세세하고 촘촘한 세분화 방식의 규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건별(개별적), 획일적(포지티브)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시홍, 앞의 글, 304면.

109) 채규항·조민경·배문선, 앞의 글, 23면.

110)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을 7가지 업종(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결제대금 예치, 전자지급고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으로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3항). 채규항·조민경·배문선, 앞의 논문, 23면.;

111) 금융위원회도 현행 7가지 종류의 전자금융업종을 3-4개로 축소개편하는 작업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시홍, 앞의 논문, 315면.

112) 김우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4권 3호, 2015, 3면.

113) 최근 금산분리에 대한 논문으로 송옥렬, 「새로운 금융환경하의 은행의 구조와 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13-04, (한국금융연구원, 2013).; 서성호·주수익, “우리나라의 현행 금산분리법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4).; 최영주, “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검토”, 「동아법학」 제65호(동아대학교, 2014).

성 검토가 요구된다.¹¹⁴⁾

은행은 그 업무의 고도의 공공성 때문에 영업에 인가(은행법 제8조 제1항)가 필요하며 그 행하는 업무의 건전성이 요구된다. 이점에서 은행은 다른 업종에 대한 진입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2009년2월 은행법 개정 때에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종전 4%에서 9%로 완화하였으나 불과 4년 후인 2013년에 다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여 소유규제를 강화하였다.¹¹⁵⁾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 및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한도와 산업자본의 주식소유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지만, 최근 대기업들과 IT벤처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하여 은행의 소유규제의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은산분리규제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¹¹⁶⁾ 우리나라는 기업집단에서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문제로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와 계열사 수의 전반적인 증가, 경제력 집중의 심화와 같은 여전히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며,¹¹⁷⁾ 2013년 동양그룹의 부실사태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련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현재의 은행법상의 은행소유규제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통해 은행경영의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금융규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와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노력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 특성, 성공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일부 완화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조정(4%→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¹¹⁸⁾

3. 은행의 업무범위

전술한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에 관련한 업무범위의 유연화하는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본체나 은행자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에 한정된 업무범위의 유연화라는 것과 업무범위 규제방법을 현재의 가능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정열거방식에서 신청에 근거하여 당국이 개별적으로 인가하는 ‘개별인가’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 등이 검토되었다.¹¹⁹⁾ 개별인가는 자기자본의

114) 김우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6면.

115) 최영주, 앞의 논문, 450면.

116) 여기에 대한 최근 논의는 은행법학회, 「금융과 IT의 융합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2015.3.27., 발표자료집.

117) 송옥렬, 앞의 논문, 7면.

118)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2015.6.18.), 4면.

119) 保木健次, 앞의 글, 5면.

충실이나 수익성, 가버넌스체제를 가미하여 경영체력과 리스크관리능력이 높은 은행만이 새로운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일정한 수준을 넘는 규모의 은행이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업무범위에 유연성을 가지게 하는 개별인가방식은 유효하다.¹²⁰⁾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가장 약한 은행을 기준으로 한정열거하는 것만으로는 은행이 해외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과제에 대해서 개별인가방식은 일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¹²¹⁾ 은행이라는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회사를 업으로 규제하는 은행법과 그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경쟁규제 및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업무의 안정성 및 고객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능한 핀테크의 진전을 위하여 유연하고 실효성 높은 제도설계를 기대한다.

4. 진입규제 완화

금융위기 이후 지급결제영역에서는 경쟁 및 효율성 추구 방향으로 규제가 개편됨에 따라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참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일본은 은행 등 이외의 자가 환거래를 업으로서 영위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사전에 자금이동업을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자금결제법 제37조). 자금이동업자에게 요구되는 재산적 요건은 자금이동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적 기초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자금결제법 제40조 제1항 3호), 일본에서 자금이동업자의 시장진입규제는 획일적이지 않고 유연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시장진입을 위한 요건으로서 최소자본금 규모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유형과 과급효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5억원~50억원)로 설정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¹²²⁾ 앞서 살펴본 EU나 미국의 자금이동서비스의 초기 자본금액수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도록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전자금융업자 진입장벽 완화 방안'에 따라 향후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현행 5억(전자고지결제)~50억원(전자화폐 발행)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5.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일본의 금융그룹제도의 개혁에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의 경영전략을 책정하고 그룹전체를 적절하게 경영 관리하도록 기능이 강화되고, 또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한정열거방식에서 개별인가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결제관련사무 등 그룹 공통업무의 통합을 촉진하는

120) 保木健次, 앞의 글, 5면.

121) 保木健次, 앞의 글, 5면.

122) 김시흥, 앞의 논문, 132면.

유연화를 진행하는 점이다.¹²³⁾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지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동년12월에 ‘금융지주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과 감독규정개정을 완료하여 시행에 들어갔다.¹²⁴⁾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와 금융 서비스 개선, 신수익원 발굴을 위한 금융혁신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위탁 및 임직원 겸직 확대로 연계되는 영업이 용이해져 활발한 이종업종간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¹²⁵⁾ 우리나라도 비금융업자의 외부지혜를 활용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업무전개와 다양한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소비자 보호 대책

모바일지갑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업도 보유 또는 공유하게 됨에 따라 해킹, 도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손실 등으로 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금융기관들도 종래부터 개인정보보호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면서 종래의 개인정보보호만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프라이버시보호” 양쪽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과거 20년 간 일본의 경우 은행의 업무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왔다. 원래 일본의 은행의 경영진은 오랫동안 업무범위의 규제가 완화된 유럽형의 「겸업은행제도 (universal banking system)」에 동경해 왔다. 일본의 은행은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것에 비추어볼 때 규제 강화로 움직이기 시작한 국제적인 동향과는 반대로 규제를 완화시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원래 일본의 은행에는 엄격한 업무범위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은행은 예전에 일반사업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를 금지하는 규제(타업금지)규제, 지주비율규제, 증권자회사와의 사이의 고객정보수수·임원겸임 등에 관한 규제(fire-wall 규제)등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은행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면, 예금·결제·융자라고 하는 상업은행의 기본업무를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업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익상반거래의 방지, 상업은행의 기본업무 이외에서 생기는 리

123) 保木健次, 앞의 글, 5면.

1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지주경쟁력 강화방안’시행(2015.12.22.).

1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지주경쟁력 강화방안’시행(2015.12.22.).

스크의 회피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의 국제적인 상황을 돌아볼 때 올바른 규제 방향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일본에서는 고도 성장기 이래로 은행이 주식의 상호보유나 용자를 부여하는 우월적 지위에 서서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방해가 되어 온 점이 있다.

은행은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고객의 편의성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확실히 일반적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노베이션을 육성하고 경제의 활성화에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은행업은 극히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며 일반론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에 특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예금자의 보호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업무범위를 확대해서 은행업무 이외의 리스크나 일반사업회사의 주식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해서 사업 리스크가 생기는 것 등은 회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거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강화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외이사를 비롯한 제3자의 관점에서 다양화된 그룹업무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결제 분야에서는 최근 큰 정세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동향의 배경에는 IT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결제를 비롯한 금융서비스의 기술적 전제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상거래 등의 전자화, 기업·개인 활동의 국제화에 수반하여 결제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변모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IT융합이라고 하는 구조적 변화라고도 해야 할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노베이션의 빠른 진전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하나의 중요한 견인력이 되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하면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가하여 경쟁적으로 이노베이션이 진행되는 것 같은 환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정보 보안, 이용자 보호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결제를 둘러싸는 법체계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와 정합적인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제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도 시야에 넣으면서 검토를 진척시켜 갈 필요가 있다.

제4세션

플랫폼 최저가 보장 약정(APPA)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안

발표자 : 이기종 교수(숙명여대)

토론자 : 이동원 교수(충북대)/ 주진열 교수(부산대)

사회자 : 배진철 원장(공정거래조정원)

플랫폼 최저가 보장 약정(APPA)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안

이 기 종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目 次]

- I. 서 론
- II. APPA의 개념 및 경제적 속성
- III. 외국 경쟁법상의 APPA 규제 사례
- IV. APPA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V. 결 론

I. 서 론

지난 1월 1일 통계청은 작년도 1월부터 10월 사이의 온라인쇼핑 판매액이 43조 6,046억 원으로 대형마트 판매액인 40조 2,734억 원보다 3조 3,312억 원 많았다고 밝혔다.¹⁾ 또한 그 다음날인 1월 2일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주식 시가총액이 약 5,700억 달러에 이르러 5,350억 달러 수준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총 1위 기업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달구었다.²⁾ 이러한 소식들은 경제활동의 중심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찍부터 세계 각 지역의 당국들은 새로이 열리는 온라인 내지 디지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으며,³⁾ 특히 경쟁당국들은 혁신적 기업의 지속적 진입을 담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인터넷 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 약정(APPA)에 대하여 각국에서 반경쟁적 행위로서 제재를 가한 사례들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APPA의 개념과 그것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개관하고, 각국

1) “온라인 쇼핑 매출, 사상 처음으로 대형마트 추월,” Chosun.com (2016.1.1. 13: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1/2016010100991.html.

2) “시총 685조 . . . 알파벳, 애플 제치고 세계 1위 등극,” 디지털타임스 (2016.1.2., 09:3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20202109931102001.

3) 예컨대, EU의 경쟁정책적 대응에 관하여 *Commission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Coherent Framework for Building Trus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for E-commerce and Online Services* at 6, COM (2011) 942 final (Nov. 1, 201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1:0942:FIN:EN:PDF>.

경쟁당국의 규제 사례를 고찰한 뒤, 이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APPA의 개념 및 경제적 속성

1. APPA와 PRA

플랫폼 최저가 보장 약정(across-platform parity agreement)(이하 “APPA”)이란 판매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이의 계약으로서 판매자가 당해 플랫폼에서 부과하는 가격이 (신규진입자와 판매자 자신의 플랫폼을 포함하여) 다른 플랫폼에서 부과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말한다.⁴⁾ 판매자 자신의 플랫폼에서 부과하는 가격만을 제한하는 경우를 ‘소폭(narrow) APPA’라 하여 모든 플랫폼에서의 가격부과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광폭(wide) APPA’와 구별하기도 한다.

APPA는 판매자간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이 판매자와 플랫폼 사이에 맺어짐으로서 수평적 효과와 수직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APPA가 판매자 내지 플랫폼 간의 경쟁이나 신규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APPA의 경쟁제한적 효과에 직접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가 매우 희소하고 그 포섭범위도 제한되어 있어 더욱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⁵⁾ 그러나 향후 온·오프라인 융합이 급진전되면서 O2O 시장 등에서 APPA가 보급될 경우 그 경쟁제한적 효과를 다루는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경쟁정책적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APPA는 종종 ‘온라인소매 MFN 조항(online retail MFN clause)’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MFN 조항이 후술하는 당사자간 PRA에 속하는 데 반해서 온라인소매 MFN 조항은 제3자 PRA에 속하여 그 경쟁정책적 함의에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APPA와 PRA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PPA는 보다 넓은 개념인 ‘가격 관계 약정(price relationship agreement: PRA)’의 일종이다.⁶⁾ PRA란 판매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이 동일 내지 유사한 다른 제품(용역)의 가격과 직접 연관되도록 하는 가격정책을 말한다. PRA는 이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지불하는 주체가 당해 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당사자간 PRA’와 ‘제3자 PRA’로 나뉜다.

당사자간 PRA는 다시 판매자가 부과하는 가격이 (i) 경쟁자의 가격에 의해 제한되

4) Paolo Buccirosi,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2015), <http://www.learconference2015.com/wp-content/uploads/2014/11/Buccirosi-slides.pdf>.

5) Sebastian Wismer, *A Note on Price-Parity Clauses in Platform Markets, in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t 52 (Gintarė Surblytė ed., 2015).

6) 상세는 Lear, *Price Relationship Agreements: Economic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at 1-2 (2012), http://www.learlab.com/pdf/lcn_pra_final_textefigures_1354270080.pdf.

는 ‘판매자비교(across-sellers) PRA’와 (ii) 판매자 자신이 다른 고객에게 부과하는 가격에 의해 제한되는 ‘고객비교(across-customers) PRA’로 나뉜다. 당사자간 PRA는 당사자인 고객을 판매자의 다른 고객 또는 경쟁자의 고객에 비해 유리하거나 최소한 대등하게 대우해준다는 의미에서 MFN(most favored nation) 조항 또는 MFC(most favored customer) 조항⁷⁾이라 부르기도 하며, 그 내용에 따라 동일한 가격을 약속하는 가격일치(price-match) 조항과 더 유리한 가격을 약속하는 가격타파(price-beat) 조항 등이 있다.

한편 제3자 PRA는 다시 (i) 제조업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인 ‘가격상대성약정(pricing relativities agreement)’과 (ii)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약정인 APPA로 구분된다.

제3자 PRA 내지 그 일종인 APPA가 경쟁법상의 이슈로 등장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이에 직접 초점을 맞춘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당사자간 PRA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론적·경험적 연구와 심결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얻은 통찰은 APPA를 포함하는 제3자 PRA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제3자 PRA는 당사자간 PRA에 대한 통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⁸⁾ 첫째, 제3자 PRA를 통해 결정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주체는 정작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해 약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약정 이행에 개입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둘째, 판매자간의 수평적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간 PRA와 달리 제3자간 PRA는 제조업자와 판매자 또는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MFN 조항 등 당사자간 PRA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개관하면서 이것이 제3자 PRA 내지 APPA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APPA에 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APPA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들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2. MFN 조항 내지 당사자 간 PRA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고객에게 저가격을 보장한다는 외견과는 달리 MFN 조항 내지 당사자간 PRA는 다음과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2.1. 판매자 간의 가격삭감 동기 감소

판매자가 가격을 내리는 목적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경쟁자가

7) 고객비교 PRA만을 MFC 조항이라 부르기도 한다. *Id.* at 1.

8) Morton Hviid, *Vertical Agreements Between Suppliers and Retailers That Specify a Relative Pric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ng Products or Competing Retailers*, Hearing on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DAF/COMP(2015)6 at 4-5 (2015),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AF/COMP\(2015\)6&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AF/COMP(2015)6&doclanguage=en).

MFN 조항을 도입한 경우 판매자의 가격인하에 대해 경쟁자가 즉각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삭감의 동기가 감소되고, 그 결과 경쟁수준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⁹⁾ 다만 이러한 우려는 고객이 저가격 보장을 실행하는 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는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를 찾아가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고객이 부담하는 번잡비용(hassle cost)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PRA의 가격삭감 억제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¹⁰⁾ 그러나 제3자 PRA인 APPA의 경우 고객이 그 집행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번잡비용이나 이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없다.¹¹⁾

2.2. 담합에서의 기만행위 유인 감소

경성카르텔의 경우이든 암묵적 담합의 경우이든 MFN 조항은 합의된 노선에서 벗어나는 판매자가 있을 경우 고객에 의해 적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경쟁자의 보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 참가자들의 기만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¹²⁾ 그러나 APPA의 경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판매자이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것은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기 때문에 MFN 조항에서와 같은 직접적인 기만행위 억제효과는 인정하기 어렵다.¹³⁾

2.3. 신규진입 억제 또는 간접적 약탈가격 설정 촉진

고객들이 기존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가격 우위가 있어야만 신규진입이 가능하다면 MFN 조항이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¹⁴⁾ 다만, 이러한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신규진입자가 쿠폰 기타 서비스로 MFN 조항을 우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신규진입자가 매우 낮은 가격으로 기존 기업의 손실을 유도하여 (특히 가격타파 약정이 있는 경우) 퇴출을 압박할 수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¹⁵⁾ APPA의 신규진입 억제 효과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9) Aaron S. Edlin, *Do Guaranteed-Low-Price Policies Guarantee High Prices, and Can Antitrust Rise to the Challenge?* 111 Harv. L. Rev. 528 (1997).

10) Morten Hviid and Greg Shaffer, *Hassle Costs: The Achilles' Heel of Price Matching Guarantees*, 8 J. Econ. & Mgmt. Strategy 489 (1999).

11) Hviid, *supra* note 8, at 24-26; Lear, *Can 'Fair' Prices Be Unfair? A Review of Price Relationship Agreements, A Report Prepared for the OFT*, paragraph 6.31 (2012), http://www.learlab.com/pdf/oft1438_1347291420.pdf.

12) Luke Garrod, *Collusive Price Rigidity under Price-Matching Punishments*, 30 Int'l J. Indus. Org. 471 (2012).

13) Hviid, *supra* note 8, at 26.

14) Maria Arbatskaya, *Can Low-Price-Guarantees Deter Entry?* 19 Int'l J. Indus. Org. 1387 (2001).

15) Hviid, *supra* note 8, at 27.

2.4. 고객들의 가격 탐색 감소

MFN 조항으로 인해 고객들은 더 이상 저가격 판매자를 검색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제품 구매 후에도 가격일치 또는 가격타파가 보장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품질 제품을 저가격으로 판매하는 자들만 MFN 조항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MFN 조항 없이는 이들의 제품이 고품질 고가격 제품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MFN 조항의 신호기능(signalling)은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¹⁶⁾ 그러나 APPA의 경우 소비자들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MFN의 신호기능은 인정하기 어렵다.¹⁷⁾

2.5. 가격차별 조장

소비자들 사이에 판매점별 가격 차이나 MFN 조항의 존재에 대한 정보력이 좋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다면 판매자는 MFN 조항을 가격차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이들 집단 사이에 가격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가 있다면 판매자는 직접적인 가격차별의 유인을 가질 수도 있다.¹⁸⁾ 그러나 APPA의 존재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력의 차이에 근거한 차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¹⁹⁾

2.6. MFN에 관한 효율성 항변

MFN에 관한 효율성 항변은 주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격일치 또는 가격타파를 요구할 수 있는 순수 MFN 조항 또는 상시적(contemporaneous) MFN 조항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²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

첫째, 순수 MFN 조항은 무기한의 가격보상 약속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커서 과다 채고의 경우에도 가격삭감을 기대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매물비용이나 기술혁신 등을 위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주장이 있다.²²⁾ 이러한 주장은 APPA에 관하여도 유사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APPA가 투자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순수 MFN 조항은 하류시장 기업들 간에 대등한 경쟁여건을 제공함으로써

16) Sridhar Moorthy and Ralph A. Winter, *Price-Matching Guarantees*, 37 *Rand J. Econ.* 449 (2006).

17) Hviid, *supra* note 8, at 28; Lear, *supra* note 11, paragraph 6.32.

18) Kenneth S. Corts, *On the Competitive Effects of Price-Matching Policies*, 15 *Int'l J. Indus. Org.* 283 (1996).

19) Hviid, *supra* note 8, at 29; Lear, *supra* note 11, paragraph 6.33.

20) 이에 비해 가격보장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는 보통의 MFN 조항을 소급적(retroactive) MFN 조항이라 한다.

21) Hviid, *supra* note 8, at 30.

22) *Id.* at 31.

하류시장 기업들이 도매가격의 인상분을 거의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원가의 일시적 하락 요인이 있을 때 하나의 계약에만 이를 반영해도 MFN 조항을 통해 모든 계약에 적용될 수 있음이 주장된다. 그러나 APPA의 경우 주로 일시적 공급계약이 위주이기 때문에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

3. APPA 내지 제3자 PRA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MFN 조항에 관한 이론들은 (판매자들 간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APPA 내지 제3자 PRA의 수평적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바, 전자의 경쟁제한적 우려가 상당부분 그대로 인정되며, 특히 전자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유들 중에 후자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PPA는 MFN 조항들과 달리 수직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것은 APPA가 판매자들 간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이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APPA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직적 측면과 전술한 수평적 측면을 결합하여 그것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실마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RPM)에서 발견되고 있다. RPM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한 문헌들과 심·판결례들은 이 두 측면을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물론 RPM에 관한 분석들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APPA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한 속성들을 반영하고 대리점 모델과 도매상 모델의 차이 등 관련 쟁점들을 함께 고찰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APP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대리점 모델과 도매상 모델의 차이에 따른 효과

후술하는 e-book 사건에서 애플은 e-book의 가격결정권을 플랫폼이 갖는 전통적인 도매상 모델(wholesale model)을 버리고, 출판사들에게 가격결정권을 넘기는 대신 플랫폼은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대리점 모델(agency model)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가격결정권의 이전이 APPA의 경제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PPA를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점 모델이 도매상 모델보다 높은 가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판매자들 간의 경쟁보다 플랫폼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한 경우 판매자들에게 가격결정권을 부여하는 대리점 모델에서의 가격 상승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²⁴⁾ 상이한 수직적 단계 중 경쟁이 가장 느슨한 단계에 속하

23) *Id.* at 32.

24) Øystein Foros, Hans Jarle Kind and Greg Shaffer, *Turning the Page on Business F*

는 사업자들에게 가격결정권이 주어지는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²⁵⁾

일단 APPA가 체결되면 대리점 모델을 택함으로써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한 가격을 제공해야 할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가지는 쪽이 APPA를 집행하고 그 위반을 감시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²⁶⁾

3.2. APPA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

APPA가 체결되면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판매자의 비용이 인상되나 이것이 APPA를 통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적어지고 따라서 판매자가 가격을 인상해도 APPA가 없을 때에 비해 판매량이 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APPA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제품의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시키는 경향이 있다.²⁷⁾ 또한 APPA를 도입하면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는 대리점 모델의 채택을 촉진함으로써 더욱 소비자 가격의 상승이 초래된다.²⁸⁾

3.3. APPA가 플랫폼 간 또는 판매자 간 담합에 미치는 효과

APPA가 플랫폼 상호간 및 판매자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완화시키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더 나아가 플랫폼 간 및 판매자 간의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 즉, APPA로 인해 담합에서 이탈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용이해져, 플랫폼 및 판매자가 담합에서 이탈할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²⁹⁾

3.4. APPA가 시장구조 내지 신규진입에 미치는 효과

고객들이 가격 우위가 없는 신규진입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APPA는

ormats for Digital Platforms: Does Apple's Agency Model Soften Competition? SNF Working Paper No 06/14 (2014), http://www.snf.no/Admin/Public/DWSDownload.aspx?File=%2fFiles%2fFiler%2fPublications%2fAN06_14.pdf.

25) Qihong Liu and Jie Shuai, *Reverse Pricing and Revenue Sharing in a Vertical Market*, 36 *Manage. Decis. Econ.* 299 (2015).

26) Hviid, *supra* note 8, at 35.

27) Justin P. Johnson, *The Agency Model and MFN Clauses* (January 10, 2014),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217849>.

28) Foros *et al.*, *supra* note 26.

29) Wismer, *supra* note 5, at 48. 인터넷의 투명성이 종종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신규진입과 혁신을 조장할 수 있는 반면, 경쟁자 간의 담합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ona Schaffer, Kimberley Piro, Alexander Rinne and Andreas Boos, *Competitor Parity Clauses: Increased Scrutiny of MF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titrust Source* at 2 (December, 2015),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publishing/antitrust_source/dec15_schaeffer_12_11f.authcheckdam.pdf.

신규진입자들로 하여금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진입자가 가격 이외의 요소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거나, 이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가능하다(예컨대, Google이 온라인 여행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한편 APPA가 플랫폼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덜 매력적인 신규진입자도 시장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APPA가 체결되면 경쟁이 완화되어 기존사업자들의 차별화 욕구가 강하지 않으므로 신규진입자들도 기존사업자들과 비슷한 품질의 제품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³⁰⁾

3.5. APPA가 투자 동기에 미치는 영향: 소폭 APPA와 무임승차

APPA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주된 항변 중 하나는 APPA 없이는 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할 동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현저해진다. 즉,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검색한 후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 플랫폼들은 보다 나은 검색을 위한 투자의 동기를 잃게 된다. 이 때 판매자의 직접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소폭 APPA를 도입하면 플랫폼이 검색기능의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되지만, 그 결과 직접 판매가 플랫폼의 수수료에 대하여 행사하던 역지력이 사라져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³¹⁾ 또한 APPA가 도입되면 판매자 간의 가격경쟁이 감소되기 때문에 플랫폼들은 방문자 수와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특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의 유인을 강하게 가진다.³²⁾

문제는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는 검색만 하고 구매는 판매자에게 직접 하는 행태(showrooming)가 만연할 경우 플랫폼이 더 이상 시장에 남아 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소폭 APPA를 허용한 여러 심결례들은 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PPA의 무임승차 문제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³³⁾ 첫째, APPA를 통해 다수의 플랫폼을 시장 내에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다채로운 플랫폼들을 보다 비싼 값에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플랫폼이 꼭 판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순수 검색사이트들이 APPA의 도움 없이도 오랫동안 번창해 온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소비자에 관한 (빅) 데이터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광범위한 기술혁신의 여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기 위

30) Andre Boik and Kenneth S. Corts, *The Effects of Platform MFNs on Competition and Entry* (January 7, 2015), <https://docs.google.com/viewer?a=v&pid=sites&srcid=ZGVmYXVsdGRvbWFpbnxhbmRyZWJvaWtY29ufGd4OjY3YjE0OGJiNDYwMjFhZDk>.

31) Benjamin Edelman and Julian Wright, *Price Coherence and Excessive Intermediation*, 130 Q. J. Econ. 1283 (2015).

32) Hviid, *supra* note 8, at 40.

33) *Id.* at 41-42.

해서 소소한 반경쟁적 효과를 갖는 수직적 제한을 감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외국 경쟁법상의 APPA 규제 사례

1. E-book 사건 (미국, EU)

1.1. 사실관계

아마존의 전자책(e-book)에 대한 저가정책이 종이책에 대하여까지 가격인하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던 출판사들은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에 발맞추어 애플과 e-book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출판사들에게 가격결정권을 부여하는 대리점 모델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대형 6개 출판사들 중 5개사가 애플과 동일한 계약을 맺었으며, (i) 애플의 아이북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e-book에 대하여 애플은 건당 30%의 수수료를 받고, (ii) 애플의 아이북 스토어에서의 판매가격은 다른 소매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APPA). 이후 출판사들은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소매업체들과도 대리점 모델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e-book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였고, 주요 e-book 소매업체들의 판매가격이 동일해졌다. 이에 애플과 출판사들의 상기 합의에 대하여 미국과 EU를 포함한 여러 관할권에서 경쟁당국의 조사와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1.2. 심결 및 판결

EU에서는 2011년 경쟁당국의 조사가 개시되어 2012년 당사자들이 위의 대리점 모델의 계약과 APPA를 5년간 금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종결되었다.³⁴⁾ 한편 EU는 2015년 Amazon의 e-book 판매계약상의 APPA 조항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였다.³⁵⁾ 미국에서는 2012년 서면법 제1조 위반혐의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출판사들은 대리점 모델의 계약을 2년간, APPA를 5년간 금지하는 동의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애플은 소송으로 나아갔으며,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고³⁶⁾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들 소송에서는 애플이 출판사들의 가격인상 공모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바, 법원은 (i) 출판사들이 e-book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대리점 모델과 APPA의 도입 등을 통해 소매가격 경쟁을 제거하기로 공모하였으며, (ii) 애플은 이러한 공모를 조장하고 실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서면법 제1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34) *Id.* at 10.

35) Schaffer *et al.*, *supra* note 29, at 4-5.

36) United States v. Apple, Inc., 952 F.Supp.2d 638 (S.D.N.Y. 2013), *aff'd*, 791 F.3d 290 (2d Cir. 2015).

2. Amazon 사건 (독일, 영국)

Amazon Marketplace는 이를 통해 판매자들이 소비자들과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오던 중, 2010년 5월 가격동등조항들(price parity clauses)을 도입하였다. 이에 의하면 유럽 각국의 Marketplace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그 판매자 자신의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다른 인터넷 유통채널에서 Amazon에서보다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해서는 안 되었다. 이 조항들은 많은 판매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2012년 영국과 독일의 경쟁당국에 의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독일 당국은 위의 가격동등조항이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신규진입의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를 지적하였다. 이에 2013년 Amazon은 (i) 유럽 전역의 Marketplace들에서 가격동등정책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ii) 모든 판매자들과의 계약이 그렇게 변경되었고, (iii) Amazon은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경쟁당국들에 보고하였고, 이에 영국과 독일 당국은 모두 사건을 종결지었다.³⁷⁾

3. 자동차보험 사건 (영국)

영국의 경쟁당국인 CMA는 민영자동차보험(Private Motor Insurance: PMI) 시장에서 보험사와 온라인 소매 플랫폼(가격비교사이트: PCW) 사이에 맺어진 광폭 MFN 조항들(wide MFNs)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이 조항들은 당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CMA는 이로 인해, (i) 온라인 플랫폼들이 부과하는 수수료 수준에 대한 경쟁이 완화되고, (ii) 잠재적 진입장벽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광폭 MFN을 금지하였다. 반면 CMA는 보험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만을 제한하는 소폭 MFN 조항들(narrow MFNs)에 대하여는, (i) PCW들의 존재가 PMI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증진시키고, (ii) 현재의 PCW 모델에 따르면 소폭 MFN 조항이 그 수익성 확보에 불가결하다고 보아, 그 경쟁제한성을 부정하였다.³⁸⁾

4. 온라인 여행사 사건들

4.1. 영 국

영국 경쟁당국(당시 OFT)은 2010년 소규모 신규진입자의 신고에 따라 온라인 호텔 예약 부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2014년 OFT는 주요 호텔 체인인 International Hotel Group (IHT)와의 가격 관련 협정을 변경하겠다는 Booking.com과 Expedia의 시정방안(commitments)을 승인하였다. 즉, 이들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t: OTA)들은 IHT가 단골 고객 등 ‘폐쇄적인 집단(closed

37) Hviid, *supra* note 8, at 17; Schaffer *et al.*, *supra* note 29, at 5.

38) ICN, *Online Vertical Restraints Special Project Report* at 74 (2015), <http://www.icn2015.com.au/download/ICN2015-special-project-online-vertical-restraints.pdf>.

group)’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격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이들 폐쇄 집단 외의 고객에 대한 가격 부과를 제한하는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위 시정방안은 2014년 영국의 경쟁항소법원(Competition Appeals Tribunal: CAT)에 의해 파기되어 경쟁당국(당시 CMA)에 환송되었다. 이에 Booking.com과 Expedia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수직적 제한들을 철폐할 것을 고려하자 CMA는 2015년 사건을 종결하고, 향후 당해 부문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³⁹⁾

4.2. 독 일

독일 경쟁당국은 2013년 독일 주요 OTA의 하나인 HRS가 호텔들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한 협정이 독일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광폭(wide) 약정 및 소폭(narrow) 약정 모두에 적용되었다. 이에 HRS는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⁴⁰⁾ 독일 당국은 2015년 Booking.com의 소폭 약정에 대하여도 위법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피심인이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독일 당국은 현재 Expedia에 대하여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⁴¹⁾

4.3. 프랑스, 스웨덴 및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및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Booking.com과 Expedia에 대한 조사를 2013년에 시작하였으며, 2015년 OTA들간의 가격차이를 제한하는 약정을 5년간 금지하겠다는 양사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였다. 이 시정방안에는 소폭 약정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쟁당국들이 시장 내에 적어도 하나의 다른 OTA가 있는 이상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프랑스 의회는 광폭 약정은 물론 소폭 약정까지 포함하여 OTA들과 호텔들 간의 가격 제한 약정을 금지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다.⁴²⁾

IV. APPA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1. 부당공동행위 규정 (공정거래법 제19조)

APPA는 그 개념상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협정으로서 판매자가 당해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다른 플랫폼에서 부과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은 것을 요구할 뿐,

39) Hviid, *supra* note 8, at 13-14; ICN, *supra* note 38, at 75-76.

40) Hviid, *supra* note 8, at 14; ICN, *supra* note 38, at 76-77.

41) Mark Briggs, *Booking.com to Appeal German MFN Ban*, GCR (January 4, 2016), <http://globalcompetitionreview.com/news/article/40225/bookingcom-appeal-german-mfn-ban>.

42) Hviid, *supra* note 8, at 14.

판매자들 간의 가격 공모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PPA 그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PA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제품의 판매가격을 모두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대리점 모델과 결합할 경우 판매자 간의 담합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술한 e-book 사건 판결이 실시한 바와 같이 판매자들이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APPA 및 대리점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판매자들에게는 부당공동행위 조항이 적용되며, APPA는 적어도 판매자 간 합의의 간접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판매자 간의 담합이 인정될 경우에 APPA의 당사자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심결례 및 판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7개 영화배급·상영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상영업자들과 수직적 관계에 있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하여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며,⁴³⁾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⁴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도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하여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영화배급업자인 원고도 수직적 관계에 있는 영화상영업자와 공동하여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이와 같은 수직적 공동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는 수평적 제한과 수직적 제한을 하나의 조항에 담은 미국(서면법 제1조)이나 EU(기능조약 제101조)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제한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조항(제23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조항(제29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수직적 제한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조항(제3조의2)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공동행위조항은 수평적 제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행위유형에 비해 가장 무거운 과징금과 형벌이 가해질 수 있어, 수직적 제한 일반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⁴⁵⁾

다만 APPA의 당사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들 간의 담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교사 내지 방조한 경우 그 경쟁제한성은 다른 수직적 제한 예컨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비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즉,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그 개념상

43) 공정거래위원회 2008.6.10. 의결 제2008-168호.

44) 서울고등법원 2009.10.7. 선고 2009누2483 판결.

45) 정호열, 「경제법」 (2012), 337-338면; 신현운, 「경제법」 (2012), 233-234면.

특정 브랜드 내의 경쟁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비해, APPA의 당사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담합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판매자들의 시장 전반에 걸친 브랜드 간 경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평적 관계의 사업자들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공고한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 시키면서 플랫폼이 APPA를 매개로 판매자들 간의 담합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전술한 판례와 심결례에 따라 부당공동행위 조항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경우 플랫폼의 가담행위는 제19조 제1항이 말하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⁴⁶⁾을 유의하여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 (공정거래법 제3조의2)

APPA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플랫폼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고(예, 전술한 온라인 여행사 사건들), 시장지배력을 가진 판매자들에 의해 선도될 수도 있다(예, 전술한 e-book 사건). 어느 경우이든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정(제3조의2)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PPA가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행위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좀 더 주의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법 제3조의2 제1항의 문구만 놓고 보면 APPA가 사업활동방해행위(동조 3호), 신규진입방해행위(동조 4호) 및 경쟁사업자배제행위(동조 5호 전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에 의하면 이들 행위 유형들의 세부 유형들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들 중 APPA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행위유형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

생각건대, APPA는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심사기준이 열거하고 있는 행위유형 중, (i)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심사기준 IV.3.라.(2)), 및 (ii)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심사기준 IV.3.라.(3))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APPA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시행령이나 심사기준에 세부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 선례⁴⁷⁾가 있기 때문이다.

46)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47) 서울중앙지법 2009.6.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위와 같이 APPA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시장획정이나 당사자들의 시장지배력을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특히 다면시장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획정이나 시장지배력의 판정과정의 난항에 빠질 경우 법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불복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인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 중에는 경쟁제한성이 아닌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정하는 행위유형이 다수 있고,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에 있어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보다는 그 적용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이하 “유형”)에 나타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유형 중 APPA에 적용가능한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 거래강제(법 제23조 제1항 3호 후단) 중 기타의 거래강제(유형 5.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23조 제1항 4호) 중 불이익제공(유형 6.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및 판매목표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경영간섭(유형 6.마.): 거래상대방의 임원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8호): 이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하는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 제7차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신설된 행위유형임

V. 결 론

APPA는 판매자와 플랫폼 간의 수직적 약정을 통해 판매자 간의 수평적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APPA는 (i) 판매자의 가격삭감 동기를 감소시키고, (ii) 고객들의 가격 탐색 동기를 감소시키며, (iii) 가격에 대한 정보에 민감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 사이의 가격차별을 조장하고, (iv) 플랫폼의 수수료와 제품의 판매가격 모두 상승시키며, (v) 판매자 또는 플랫폼 간의 담

48) 상세는 이기중,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경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5), 53면 이하.

합을 조장하고, (vi) 가격을 무기로 하는 신규진입을 억지할 뿐 아니라, (vii) APPA로 플랫폼의 수익성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덜 매력적인 신규진입도 가능하게 하는 등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APPA의 경쟁제한성 주장에 대하여는 (i) APPA 없이는 플랫폼이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는 투자에 대한 동기가 없어질 수 있으며, (ii) APPA는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검색만 하고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행태를 막아 플랫폼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는 항변이 가증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변은 플랫폼의 수익모델, 기술혁신의 여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APPA에 적용가능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공동행위 규정이다. 다만 APPA 자체가 담합은 아니며 담합의 조장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을 위하여는 별도의 공모가 있어야 한다. 판매자의 담합에 적극 가담한 플랫폼에 대하여는 부당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이다. APPA의 당사자들인 플랫폼 또는 판매자들의 시장지배력 입증 가능한 경우 APPA에 대하여 사업활동 방해행위 규정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다. 시장지배력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APPA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기타의 거래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 및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신현윤, 「경제법」, 2012.
- 이기중,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경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5.
- 정호열, 「경제법」, 2012.
- Arbatskaya, Maria, *Can Low-Price-Guarantees Deter Entry?* 19 Int'l J. Indus. Org. 1387 (2001).
- Boik, Andre, and Kenneth S. Corts, *The Effects of Platform MFNs on Competition and Entry* (January 7, 2015), <https://docs.google.com/viewer?a=v&pid=sites&srcid=ZGVmYXVsdGRvbWFpbnxhbmRyZWJvaWt1Y29ufGd4OjY3YjE0OGJiNDYwMjFhZDk>.
- Briggs, Mark, *Booking.com to Appeal German MFN Ban*, GCR (January 4, 2016), <http://globalcompetitionreview.com/news/article/40225/bookingcom-appeal-german-mfn-ban>.
- Buccirossi, Paolo,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2015), <http://www.learconference2015.com/wp-content/uploads/2014/11/Buccirossi-slides.pdf>.
- Corts, Keneth S., *On the Competitive Effects of Price-Matching Policies*, 15 Int'l J. Indus. Org. 283 (1996).
- Edelman, Benjamin, and Julian Wright, *Price Coherence and Excessive Intermediation*, 130 Q. J. Econ. 1283 (2015).
- Edlin, Aaron S., *Do Guaranteed-Low-Price Policies Guarantee High Prices, and Can Antitrust Rise to the Challenge?* 111 Harv. L. Rev. 528 (1997).
- Fiona, Schaffer, Kimberley Piro, Alexander Rinne and Andreas Boos, *Competitor Parity Clauses: Increased Scrutiny of MF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titrust Source (December, 2015),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publishing/antitrust_source/dec15_schaeffer_12_11f.authcheckdam.pdf.
- Foros, Øystein, Hans Jarle Kind and Greg Shaffer, *Turning the Page on Business Formats for Digital Platforms: Does Apple's Agency Model Soften Competition?* SNF Working Paper No 06/14 (2014), http://www.snf.no/Admin/Public/DWSDownload.aspx?File=%2fFiles%2fFiler%2fPublications%2fAN06_14.pdf.
- Garrod, Luke, *Collusive Price Rigidity under Price-Matching Punishments*, 30 Int'l J. Indus. Org. 471 (2012).
- Hviid, Morton, *Vertical Agreements Between Suppliers and Retailers That Specify a Relative Pric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ng Products or*

Competing Retailers, Hearing on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 DAF/COMP(2015)6 at 4-5 (2015),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AF/COMP\(2015\)6&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AF/COMP(2015)6&doclanguage=en).

Hviid, Morten, and Greg Shaffer, *Hassle Costs: The Achilles' Heel of Price Matching Guarantees*, 8 J. Econ. & Mgmt. Strategy 489 (1999).

ICN, *Online Vertical Restraints Special Project Report* (2015), <http://www.icn2015.com.au/download/ICN2015-special-project-online-vertical-restraints.pdf>.

Johnson, Justin P., *The Agency Model and MFN Clauses* (January 10, 2014),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217849>.

Lear, *Can 'Fair' Prices Be Unfair? A Review of Price Relationship Agreements*, A Report Prepared for the OFT, paragraph 6.31 (2012), http://www.learlab.com/pdf/oft1438_1347291420.pdf,

_____, *Price Relationship Agreements: Economic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2012), http://www.learlab.com/pdf/lcn_pra_final_textefigures_1354270080.pdf.

Liu, Qihong, and Jie Shuai, *Reverse Pricing and Revenue Sharing in a Vertical Market*, 36 Manage. Decis. Econ. 299 (2015).

Moorthy, Sridhar, and Ralph A. Winter, *Price-Matching Guarantees*, 37 Rand J. Econ. 449 (2006).

Wismer, Sebastian, *A Note on Price-Parity Clauses in Platform Markets, in Competition on the Internet* (Gintarė Surblytė ed., 2015).

주제어: 플랫폼 최저가 보장 약정, 가격 관계 약정(APPA), MFN 조항, 담합, 신규 진입, 대리상 모델, 도매상 모델, 무임승차, 광폭 APPA, 소폭 APPA

<Abstract>

The Regulation of Across-Platform Parity Agreements (APPA)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Lee, Ki Jong

Across-platform parity agreements (APPA) are concluded vertically between platforms and sellers, however, affect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sellers in their price decisions. Thus APPAs bring about negative effects on competition by (i) reducing rivals' incentive to cut prices, (ii) affecting consumers' search behavior, (iii) enabling price discrimination, (iv) raising both the fee for platforms and the price of products, (v) facilitating collusion between platforms and sellers, (vi) deterring entry, and (vii) allowing entry less desirable for consumers. Some proponents of APPAs maintain that they could (i) promote welfare-enhancing investments, and (ii) prevent 'showrooming' by consumers so that platforms could remain viable. However, these defences should be carefully evaluated in consideration of the profit model of platforms and the potential for innovation in the industry.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uld be applied to APPAs. First, the provision on concerted acts: it should be noted that APPAs are just cartel-facilitators, not cartels by themselves, and require separate conspiracy for collusion to be sanctioned under the provision. If platform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of collusion, with the help of APPAs, they could also be sanctioned under the provision as accessories. Second, the provision on the abuse of dominance: when the market power of the participants in APPAs could be established, the provisions on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erprises and the hindrance to the interests of consumers could be applied. Third, the provis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even when participants' market power cannot be established, we could consider sanctioning APPAs as unfair trade practices.

Key words: across-platform parity agreement(APPA), price relationship agreement, MFN clause, collusion, entry, agency model, wholesale mode, free-riding, wide APPA, narrow APPA
--